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 발달권 · 참여권 -

일 시 : 2010년 11월 5일(금) 14:00~18:00

장 소 :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자스민룸

일정표

14:00-14:3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실태조사결과
- 발달권·참여권-

모상현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30-15:00

아동의 발달권·참여권 정책방안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부교수

15:00-15:30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과제와 추후
방향모색

김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5:30-16:00

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개발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16:00-16:10 휴 식

16:10-18:00 주제별 토론 및 종합 논의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로 본 정책제언 이중섭

광주대학교

객원교수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로 본 정책제언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위한 제언 천정웅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NYPI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발전과제 이민희

평택대학교

교수

청소년인권정책 현황과 과제모색

이정현
정유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주무관

목 차

I. 아동·청소년지표체계와 실태조사결과 - 발달권·참여권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6
3. 201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설문체계 개발방향	7
1) 지표산출과 설문문항 개발과정에 대한 개요	7
2)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	8
3)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18
4)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에 따른 설문항목체계	20
4. 조사표본 및 조사설계	26
1) 모집단	27
2) 표본설계	32
3) 표집방법(중간보고서 참조)	33
4) 모수추정	33
5) 무응답의 처리	36
4. 조사방법	37
5. 조사결과	37
1) 분석방법	37
2) 조사대상자의 특성	38
3) 아동·청소년 발달권 실태분석	38
4)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분석	39
II. 아동의 발달권·참여권 정책방안	41
1.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 환경	44
1)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 미흡한 이행	44

2) 아동기에 대한 인식 부족	47
3) 아동참여에 대한 인식 결여	48
4) 아동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의 취약함	49
2.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	50
1) 국가 아동정책과 아동지표의 부재	50
2) 정책의 다양성 부족 및 정부부처 간 산발적인 정책 시행	53
3) 아동기에 대한 저조한 투자 : 부족한 예산	54
4) 위기개입 위주의 아동정책: 아동참여의 소외	56
5) 서비스전달체계의 한계	58
3.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정책 방안	60
1) 국가 아동정책의 수립	60
2) 국가 아동지표 및 정책 성과지표의 확립	62
3) ‘아동참여’에 대한 논의 공론화 및 체계화	63
4) 아동정책조정기구 활동 재개	66
5)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의 설립	67
6) 아동 담당 부서의 확대 및 핵심연구 연구기관 설립	68
4. 결 론	69

III.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과제와 추후 방향모색 73

1.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의 현황	75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의 문제점	76
1) 아동·청소년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76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참여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미흡	78
3) 아동·청소년의 비제도적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 부족	79
4)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80
5) 아동·청소년 생활세계에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 부족	80
6) 아동·청소년 참여의 국제 교류 체계 구축 미흡	81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의 개선방안	81

1) 청소년정책담당자, 청소년지도자,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82
2) 참여 정보의 제공과 참여를 통한 교육의 활성화.....	82
3) 아동·청소년 참여 친화적인 지방자치단체(도시) 모델 형성.....	84
4) 세대간, 부문간 아동·청소년 참여 협력 체계	85
5) 밑으로부터 정책 참여 활성화와 비제도권 참여 수렴	87
6) 아동·청소년 참여 관련 국제 교류 활성화.....	88
IV. 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개발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91
1. 서론.....	93
2. 본론.....	95
1) 아동 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체계의 의의 및 기능	95
2) 아동 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체계 검토.....	106
3. 소결.....	112
토 론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로 본 정책제언.....	123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로 본 정책제언.....	132
3.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위한 제언.....	141
4. NYPI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발전과제.....	150
5. 청소년인권정책 현황과 과제모색.....	159
참고자료. 청소년인권지표의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65

표 및 그림 목 차

<표 1-1>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11
<표 1-2> 2010 아동·청소년 참여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16
<표 1-3>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19
<표 1-4> 초등학생용 설문지에서 제외된 개별지표항목	20
<표 1-5> 발달권 설문항목체계의 구성	22
<표 1-6> 참여권 설문항목체계의 구성	24
<표 1-7>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를 위한 통계틀	28
<표 1-8>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29
<표 1-9>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30
<표 1-10>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31
<표 1-11> 표본크기	32
<표1-12> 조사대상자의 특성	38
<표 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및 과제	46
<표 2-2> 2008년까지의 아동정책 체계	51
<표 4-1>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 지표체계	97
<표 4-2 > 참여권의 핵심 세부지표항목 및 대표적 정량지표 항목	98
[그림 4-1]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모형.	108
[그림 4-2]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의 체제분석적 개념틀	110
<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	162

I . 아동 · 청소년지표체계와 실태조사결과
- 발달권 · 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 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년차 과제로서, 인권영역 중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토대의 구축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태분석 결과를 통해 발달·참여권영역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그 향상과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OECD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152개 항목의 청소년인권 지표체계를 개발하였고, 사업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전체 4개영역의 핵심 정성지표 항목을 중심으로 63개 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한국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3차년도인 2008년에는 1,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 실태를 비교하는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2009년 4차년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영역에서 총 34개의 새로운 지표항목이 추가로 발굴·보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4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구(생존권 46문항, 보호권 84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5차년도 마지막 연구에서는 전체 4개 영역으로 분류된 인권체계 중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을 함께 묶어 주요 지표의 추가 산출을 통해 133문항(청소년용 기준)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실시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변화양상과 인권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별 지표의 선정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조사실용성(practicability),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을 기준으로 관심영

역별 대표항목을 선별·추가하여 관계전문가·실무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개선된 설문도구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행정통계에 근거한 정량지표를 추가하여 해당 정성지표 중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였다. 정성·정량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정리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예정이며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변화양상과 진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계열적 횡단자료 축적의 일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방향의 효용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참여권 분야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있는 중요 지표를 중심으로 연령층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층으로 나누어 두 부분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총 두 종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주요 정성지표 중심의 실태보고서와 행정지표를 토대로 세부별 현황과 정책적 제안을 기술한 정량지표중심의 보고서로 구성될 예정이다.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차에 걸쳐 제작된 한국판 아동·청소년 인권조사 도구를 이용해 추후 격년으로 반복횡단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구축기반을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과 과제로 대두된 우리 아동·청소년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 인권신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010년도 5차년도 연구의 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문헌분석을 통해 이론적 논의를 진행시켰으며 올해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지표 및 세부항목을 선정하는데 연구의 기본방향

으로 정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기존 지표개발과 보완과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조사도구의 개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둘째, 2006년부터 3차년에 걸쳐 진행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인권 지표(안)를 세부적으로 분석, 발달·참여권 분야에서 종단적 실태조사에 활용할 최종지표의 선정 및 조사를 위한 설문도구의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06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청소년인권지표-대분류(5개)-관심영역(20개)-세부관심영역(56개)의 분류체계에 총 152개의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량지표 77개, 정성지표 75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지표관련 연구결과를 기초로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조사실용성(practicability)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지표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표를 검토·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이렇게 제작된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달·참여권영역에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9,500명 정도이다. 조사결과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실태조사결과 및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의 설정과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아동·청소년 발달·참여권 영역에서 도출된 다양한 인권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행정통계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을 리뷰하도록 한다. 이에 근거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정책·법·제도 및 주요 인권이슈와 활동을 파악,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실태에 적합한 정책방안과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며,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 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연구의 앞에서 기술한 연구내용과 상응하여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진행과정과 방법은 제 IV장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청소년 발달 및 참여권 분야에서 인권현황 및 모니터링 사례에 대한 선행 조사결과와 주요 국가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와 지표에 대한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본 체제에 맞는 지표산출을 위한 이론적 논거로 삼았다. 동시에 국내에서 연구된 인권지표체계 검토를 통해 후속 지표개발 및 조사도구 개발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이용하였다.

둘째, 전문가 의견조사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조사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지표항목 및 설문문항의 선정 및 확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환경의 개선과 인권신장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 및 구체적 실천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단은 201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이용하여 9500명 내외의 청소년을 표집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연구절차를 거쳐 제작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단위 학급을 중심으로 집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지 조사항목은 청소년의 발달권·참여권 영역에서의 인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1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연령층의 사회·인지적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용과 청소년용 두 가지 유형의 설문도구로 구성하였다.

넷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통해 산출된 실태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를 인권관련 학계 및 해당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보완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협의와 개선된 인권지표 결과 생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3. 201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설문체제 개발방향

1) 지표산출과 설문문항 개발과정에 대한 개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다양한 사회체제 안에서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현재의 인권현황과 변동양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한 분석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침해 요소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체계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인권지표와 설문도구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완이 요구된다.

본원의 지표연구의 1차년도 사업인 2006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태조사에 활용한 2007년도 설문조사도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4개 영역의 157개에 달하는 개별지표 항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당해 년도에 모두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단 한 차례의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표항목의 수는 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 2007년에는 지표별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4개영역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특정영역에서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2007년도에는 인권 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실태조사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주요 인권분야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설문조사 도구의 단계적 개발과 인권환경의 변화양상과

주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반복·횡단조사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인권 지표가 안정적·지속적으로 보완·개발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연속적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설문도구의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4개 인권분야 중 서로 유사한 영역을 묶어 각각의 개별지표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설문도구개발이 요청되며 조사의 주기적 실시를 통해 아동·청소년인권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주기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에는 발달권과 참여권을 중심으로 기존 지표(2006년) 및 설문체계(2007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09년도 생존권과 보호권영역에 이어 2010년도에는 발달권 영역에서 63문항, 참여권 영역에서 6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기존의 세부관심영역과 개별지표항목을 검토·보완하여 개발할 수 있었다.

지표 및 설문문항의 개발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관련 학계 연구자, 정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각 인권지표와 해당 문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의뢰하였다. 우선 전문가들에게 올해 개발 예정인 각 영역에 해당하는 인권지표와 이를 대표하는 설문조사표를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지표가 그 영역의 인권을 얼마나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문항이 얼마나 정확히 지표를 대표하는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지표별점수와 문항의 타당도는 각 전문가들의 응답빈도를 합산해서 각각의 지표의 타당도 정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115문항(초등용)과 133문항(중고용)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2010년도에 수행된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과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에 따른 설문항목체계 그리고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등의 내용을 기술하게 될 것이다.

2)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

아동·청소년 발달권과 참여권 인권지표 및 조사도구의 개발방향에 기초하여,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협의를 통해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영역에서 이 두 영역의 환경개선과 권리신장 실태를 잘 반영하고, 더불어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성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행정지표 등의 객관적 지표에서 볼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특성과 욕구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지표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1)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개별지표의 타당화조사

아동·청소년 발달·참여권 지표체계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온라인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1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0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는 델파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델파이 조사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의 패널로 구성 될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리에 따라(Murphy & Hammons, 1995), 15명 정도의 인원은 충분히 신뢰성을 확보할 수준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조사에 참가한 인력은 현직 청소년 관련 교수 8명,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3명, 현직 교사 4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협조요청을 유선으로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e-mail 의견조사지를 전달하고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의견조사지는 개별지표항목이 세부관심영역을 얼마나 정확히 대표하고 있는지를 묻는 4점 리커터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75% 이상인 3점 이상인 항목에 대해 타당 의견으로 채택하는 방식(Murphy & Hammons, 1995)에 근거하여 해당지표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추후 전문가 의견을 거친 후 최종 지표항목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개별지표 항목은 아래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에 제시되어 있다.

(2) 발달권 영역에서의 지표체계 구성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 발달권 지표는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의 5개 관심영역에 각 2개의 세부관심영역을 가져 총 10개의 세부관심영역이 형성되었고 정량지표 10개, 정성지표 25개로 총 35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에 대한 개념 정립에 있어 생물학적 의미의 발달과 발달을 위한 제반 여건과 환경에 대한 요소도 고려하여 개발의 의미를 포함하는 발달을 전제로 개념설정을 하고 있다. 이에 모든 발달의 전제가 되는 신체적 발달지표와 아울러 청소년 발달권을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 정의될 수 있다. 발달권 중 정서발달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으로 심리적 발달과 감성적 발달로 관심영역을 분리 할 필요가 있으나,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문제 및 해당 관심영역 분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은 기존 지표분류의 틀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 발달권의 경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각 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세부영역의 개별지표항목을 검토·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세부관심영역 중 인지능력(3-1-2)과 신체적 능력(3-5-2)은 중요 발달권 지표이지만 여타 다른 청소년지표 연구에서 중복 조사되는 경우가 많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할 두 번째 정량지표연구에서 행정통계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함으로 본 실태조사에서는 해당지표 관련 문항개발을 수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 조사가 통계청 승인과제로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이 함께 묶여 조사가 수행되기에 조사해야하는 문항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표 1-1>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3-1-1-1. 취학률 3-1-1-2A. 중퇴율 3-1-1-2B. 학교등교거부이유 3-1-1-3. 대학진학률 3-1-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3-1-1-5.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 3-1-1-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3-1-1-7. 하루 평균 학습시간
	3-1-2. 인지능력	3-1-2-1. 창의성 지수 3-1-2-2. 문제해결능력 지수 3-1-2-3.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1-2-4. 지능지수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3.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3-2-1-4. 청소년 여가시간과 유형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3-2-1-6.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 3-2-1-7. 고민유형과 고민상담 3-2-1-8. 부모·자녀관계
	3-2-2. 정서적 안정	3-2-2-1. 우울증 지수 3-2-2-2. 스트레스 지수(학업) 3-2-2-3. 행복(심리적 안정) 지수 3-2-2-4. 자존감 수준 3-2-2-5. 자기 효능감 3-2-2-6. 정서 조절감 3-2-2-7. 정서적 고립감 3-2-2-8. 낙관성 3-2-2-9. 학교생활의 적응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3-3-1-1.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3-3-1-2A.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로그램 참여횟수 3-3-1-2B.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 3-3-1-3.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3-3-1-4.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동아리 수 3-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3-3-2. 사회성 발달정도	3-3-2-1. 갈등해결능력지수(기존의 갈등이해능력) 3-3-2-2. 문화감수성 지수 3-3-2-3. 타문화 수용능력 지수 3-3-2-4. 리더쉽 능력 지수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기회	3-4-1-1. 월 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 수 3-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3-4-1-3.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3-4-2. 직업능력	3-4-2-1. 진로성숙도 지수 3-4-2-2. 직업기초능력수준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기회	3-5-1-1. 청소년 주당 평균 운동시간 3-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3-5-1-3. 건강에 대한 관심과 평가
	3-5-2. 신체적 능력	3-5-2-1. 50m 달리기 3-5-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 굽혀 매달리기) 3-5-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3-5-2-4.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3-5-2-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3-5-2-6.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2010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질 내용과 관련되는 개별지표항목은 진하게 표기되어 있다.

<표 1-1>에 2010년 아동·청소년 보호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과 조사에 정인 개별 지표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각 개별지표 항목들은 각각의 세부 지표항목에 따라 인지적 발달은 인지발달 기회, 인지능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서적 발달은 정서발달 환경, 정서적 안정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발달은 사회성 발달기회, 사회성 발달정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 직업능력의 세부관심영역

역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신체적 발달은 신체발달기회, 신체적 능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3) 참여권 영역에서의 지표체계 구성

아동·청소년 참여권 영역의 지표체계는 청소년이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안)』에서는 청소년참여권의 관심영역을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종교결정권,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교육 및 진로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사적취향의 표현, 학생으로서의 의견표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학교내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외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보접근권은 도서에 대한 접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사회참여 및 참정권은 사회참여, 참정권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된다.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관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량지표로 개발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보완·개발하고자 하였다. 참여권의 경우 2006년도에 개발된 지표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된 참여권 실태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분류틀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문서 검토를 통해 참여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해 지표체계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일정 상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도 지표체계 틀 내에서 개별지표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정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겨 두었다.¹⁾

2006년도 지표체계에서 변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참여권 지표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도에는 기존의 5개 관심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는 ‘참여관련 인식’을 추가하여 총 6개 관심영역으로 구성하였다(2006년도 참여권 지표체계는 5개 관심영역 - 12세 세부관심영역 - 31개 개별지표로 구성됨).

첫 번째 관심영역인 ‘자기결정권’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로 보완하고, 세부관심영역으로 ‘4-1-5.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별지표로 ‘4-1-5-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4-1-5-2.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지표를 추가하였다.

두 번째 관심영역인 ‘표현의 자유’의 세부관심영역으로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과 ‘4-2-4.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를 보완하였다.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영역은 ‘4-2-3-1.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과 ‘4-2-3-2. 인터넷 이용 표현활동’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는 ‘4-2-4-1.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지표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관심영역인 ‘집회·결사의 자유’의 두 개의 세부관심영역은 그대로

1) 차년도 지표 수정작업에 참고가 되도록 수정작업 경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수정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관련 조항 중 제14조부터 16조 관련 내용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 관련 내용을 별도 관심영역으로 독립시키고 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관심영역을 추가하여 7개의 관심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관심영역을 대표하는 개별지표의 분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지표의 경우 관심영역 이동이 이루어졌다. 참여권지표체계와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여 아동·청소년학자 외에 법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의 인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받으며 검토과정을 진행하여 1차 수정안은 7개 관심영역, 13개 세부관심영역, 47개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지표들과 지표항목 분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예: 정보접근권의 분류 기준 등) 최대한의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차 수정안에서 관심영역은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 및 사생활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관련 인식 등 7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유지하고 ‘4-3-2.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영역에 ‘4-3-2-2.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과 ‘4-3-2-3.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지표 등 두 개의 지표를 보완하였다. 2006년도 지표에 포함되어 있었던 ‘4-3-2-1. 청소년관련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비율’은 발달권의 ‘3-3-1. 사회성 발달 기회’영역의 지표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권에서는 제외하였다.

네 번째 관심영역인 ‘정보접근권’을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로 보완하고, 세부관심영역으로 ‘4-4-3. 알권리’를 추가하였다. ‘알권리’에 해당하는 개별지표는 ‘4-4-3-1.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 정도’와 ‘4-4-3-2.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이다.

다섯 번째 관심영역인 ‘사회참여 및 참정권’에 해당하는 세부관심영역으로 ‘4-5-2. 학교에서의 참여’를 추가하여 2006년도 지표체계에 ‘참정권’에 분류되어 있던 학교에서의 참여관련 지표를 이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첫 번째 세부관심영역인 ‘4-5-1. 사회참여’에 ‘4-5-1-4.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과 ‘4-5-1-6.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를 추가하였고, ‘4-5-3. 참정권’영역에 ‘4-5-3-2.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초등학생의 경우 선거 참여 의향)’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관련 인식’을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추가하여 참여 의의와 필요성, 참여의 장애, 참여 효과, 참여 활성화 방안, 참여권 보장 수준 등 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를 보완하였다. 지표 보완 결과, 2010년 참여권 지표체계는 <표 1-2>와 같이 6개 관심영역-17개 세부관심영역-48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언급했듯이 지표체계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지표 분류틀부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수정 작업은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둔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기본틀은 유지한 채 일부 영역과 지표를 부분적·단편적으로 수정·보완함에 따라 지표틀 구성과 개별지표 분류에 있어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06년도에 지표체계(안)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지표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후속연구 과정에서 한 해 정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지표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사회지표의 성격 상 참여권 지표체계 검토 작업은 사회변화와 관심이슈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1-2> 2010 아동·청소년 참여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4-1. 자기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과 사생활 보호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4-1-1-3.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1-2-2.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비율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4. 문화·여가 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4-1-5.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4-1-5-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4-1-5-2.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취향의 표현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4-2-2.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1.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2. 인터넷 이용 표현활동
	4-2-4. 청소년 발언권	4-2-4-1.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준중정도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4-3-1-2. 학생 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4-3-2.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	4-3-2-1.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4-3-2-2.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4-3-2-3.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
4-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4-4-1-2.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한 비율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4-4-3-1.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 정도
		4-4-3-2.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4-4-3. 알권리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4-5-1-2.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4-5-1-3. 청년 실업률 4-5-1-4.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4-5-1-5. 청소년 정책참여 동아리 참여율 4-5-1-6.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 정도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비율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4-5-2-4.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 정도
	4-5-2. 학교에서의 참여	
	4-5-3. 참정권	4-5-3-1.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4-5-3-2.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선거 참여 의향
	4-6. 참여관련 인식	4-6-0-1. 참여 의의와 필요성 4-6-0-2. 참여의 장애 4-6-0-3. 참여 효과 4-6-0-4. 참여 활성화 방안 4-6-0-5. 참여권 보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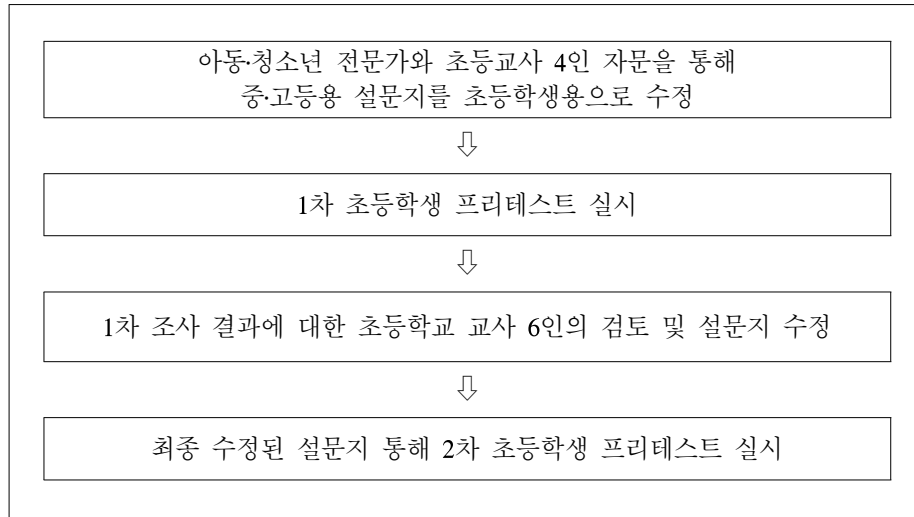
※ 2010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질 내용과 관련되는 개별지표항목은 진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이탤

력체는 2010년에 보완된 지표이다.

3)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청소년용으로 수정·보완된 설문지의 일부내용은 조사대상 아동 (초등학교 4~6학년생) 들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연령 특성상, 설문지의 내용과 어휘의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표본을 위한 설문지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를 초등학생 대상 프리테스트를 통해 점검하였다. 프리테스트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아동·청소년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와 초등학교 교사 4명의 도움을 받아 연구진 차원에서 아동용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설문문항들이 제외되었고, 또 일부 문장과 어휘들이 수정되었다. 먼저 이 설문지를 가지고 초등학교 4,5,6학년 3개 반 90여명에게 배포되어 1차 프리테스트가 실시되었는데, 설문조사에 앞서, 이해가 어려운 설문내용, 문장, 어휘들에 대해서는 설문지에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주지시켰다. 이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표시된 문장과 어휘들은 보다 더 쉽게 수정하였고, 이렇게 재수정된 초등학생용 설문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교사 6인에게 감수를 받아, 내용과 어휘 등을 최종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수정된 설문지를 가지고 본 설문내용을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 3개 반을 대상으로 2차 프리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전체적인 과정을 요약하면 <표 1-3>와 같다.

<표 1-3>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재 조사결과, 내용과 문장, 어휘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무응답이나 오류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프리테스트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초등학생용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고등학생용 설문지에는 포함되었으나, 초등학생용 설문지에는 제외된 내용은 아래의 <표 1-4>와 같다.

발달권 영역에서는 인지적 발달기회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려는 이유를 묻는 문항과 사회적 발달지표 중 초등생들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문항을 그리고 초등용으로는 아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직업발달과 관련된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에 대한 영역들이 제외되었다.

참여권 영역에서는 학교와 사회에서의 집회결사와 관련된 문항과 사상·종교·양심의 자유에서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을 묻는 문항이 제외되었다.

<표 1-4> 초등학생용 설문지에서 제외된 개별지표항목

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개별지표 고유번호
I. 발달권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중퇴율(학업중도포기이유)	3-1-1-2A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 한 의견	3-3-1-2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기회	진로준비행동	3-4-1-2
			진로교육경험유무/만족정도	3-4-1-3
		3-4-2. 직업능력	진로직업태도	3-4-2-1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방향	
II. 참여권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학생회 운영 시 학생 자율권 정도	4-3-1-2
			학교의 교내·외 동아리활동 허 용 여부	4-3-1-5
		4-3-2. 사회에서의 집회·결사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4-3-2-2
	4-4. 사상·양심·종교 및 사생활의 자유	4-4-1. 사상·양심·종교 의 자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	4-4-1-3

4)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에 따른 설문항목체계

본 조사의 설문문항체계의 구성은 위에서 논의된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에서 선정된 정성지표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정성지표로서 활용 가능한 지표 체계화 작업과 더불어 발달권 및 참여권의 개별지표에 상응하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도에 선별하여 설문조사문항으로 개발된 지표는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조사실용성(practic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지표선정의 보편적 기준인 측정가능성과 조사실용성 이외에 국가 간 인권 모니터링 산출결과의 비교를 고려한 지표항목의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의 측면이외에 우리 아동·청소년이 처한 특수한 인권현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도 중요 지표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 발달권 영역에서의 설문문항의 체계화 작업은 5개 발달권 개별지표에 상응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정성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즉 개별문항의 개발은 활용성에 중점을 둔 정성지표로서 사용 가능한 지표체계화 작업을 의미한다. 인지발달의 기회는 중퇴율과 연관이 있는 항목, 학교등교거부의 이유, 사교육과 경험유무와 효과성,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 및 진행수준과 만족도, 평균학습시간 등을 포함한다. 정서적 발달환경은 부모 및 선생님과 대화 빈도, 여가 및 여가시간과 여가시설과 관련된 문항,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고민관련 문항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정서적 안정감은 현재의 심리·정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을 본 조사에 맞게 변형되어 제시되었다. 사회성 발달기회는 묻는 문항들은 친구와 관련된 문항, 청소년 활동과 동아리 활동 유무와 그 유용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성 발달정도 혹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전략을 묻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진로준비 기회는 진로준비 행동과 진로경험 유무와 효과성을 묻는 질문, 그리고 직업능력은 직업진로태도와 졸업 후의 진로방향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체발달 기회는 자신의 건강과 운동 및 수면과 관련된 문항들로 제시되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인지 능력과 신체적 능력 지표는 중복 가능성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정량지표연구에서 행정통계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함으로 제외되었다.

둘째, 아동·청소년 참여권 영역에서의 설문문항의 체계화 작업은 7개 참여권 개별지표에 상응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정성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지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두발과 복장 등 사적 취향의 표현 실태,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 자율

권 보장 정도,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터넷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표현실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등 학교 내 상황과 청소년 자치기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상·양심·종교 및 사생활의 자유는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 개인정보 보호 여부, 개인 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소지 허용 여부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이들 실태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으로서 정보접근권의 경우 학교 규칙을 알려주는지,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권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사회참여 및 참정권은 자원봉사활동과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선거가능 연령이 되었을 때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관련 인식의 경우 사회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장애요인, 활성화방안, 현재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설문조사도구는 청소년용 기준 발달·참여권 분야에서 총 133문항(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으로 선정·구성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5>, <표 1-6>과 같다. 설문도구의 각 조사항목은 초등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누어 분류되었으며, 각 설문문항의 순서에 따라 해당 지표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1-5> 발달권 설문항목체계의 구성

관심영역	세부영역	조사문항	문항번호		지표항목
			초등	중고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학업중도포기 이유		26	3-1-1-2A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23	25	3-1-1-2B
		사교육 경험 유무와 효과성	8 8-1	8 8-1	3-1-1-4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5	5	3-1-1-5와 6
		학교수업진행 수준	6	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5-1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7	7	3-1-1-7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부모님과과의 대화빈도 (아버지)		16-1	18-1	3-2-1-1
		부모님과과의 대화빈도 (어머니)		16-2	18-2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		16-3	18-3	3-2-1-2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 (하루기준)		9	9	3-2-1-4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		10	10	
		휴일을 보내는 방법		12	12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11	11	3-2-1-5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	가정	24-1	30-1	3-2-1-6
			친구	24-3	30-3	
			학교	24-2	30-2	
		고민 상담 대상		15	17	3-2-1-7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		14	16	
		부모·자녀관계		17-1 17-2	19-1 19-2	3-2-1-8
	3-2-2. 정서적 안정	우울감		20-1~ 3	22-1~ 3	3-2-2-1
		학업스트레스		20-7 20-8	22-7~ 9	3-2-2-2
		전반적인 행복감		21-1 21-2	22-1 22-2	3-2-2-3
		자아존중감		22-1~ 3	24-1~ 3	3-2-2-4
		자기효능감		22-4 22-5	24-4 22-5	3-2-2-5
		정서적 고립감		20-4~ 6	22-4~ 6	3-2-2-7
		정서적 조절감		22-6,7	24-6,7	3-2-2-6
		낙관성 수준		22-82 2-9	24-82 4-9	3-2-2-8
	3-3-1. 사회성 발달기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18	20	3-3-1-1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13	13	3-3-1-2A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14-1~ 3	3-3-1-2B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			15	3-3-1-4
3-3. 사회적 발달	3-3-2. 사회성 발달정도	갈등해결전략		19-1~ 4	21-1~ 4	3-3-2-1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 기획	진로준비행동		28-1 28-2	3-4-1-2
		진로교육경험유무/만족정도		27 27-1	3-4-1-3
	3-4-2. 직업능력	진로직업태도		28-3~ 5	3-4-2-1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29-1 29-2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획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	4	4	3-5-1-1
		평일 평균수면시간	1	1	3-5-1-2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2	2	3-5-1-3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	3	

<표 1-6> 참여권 설문항목체계의 구성

관심 영역	세부영역	조사문항	문항번호		지표 항목
			초등	중고	
4-1. 자기 결정권 (청소년 의견존 중)	4-1-1. 가정에서의 의견존중	가정 중요사 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25-1	31-1	4-1-1-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25-2	31-2	4-1-1-4
		진로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25-3	31-3	4-1-1-5
	4-1-2. 학교에서의 의견존중	학교활동에 대한 학생 결정권 - 특별활동, 방과후 교실 학생 선택권	26-1	32-1	4-1-2-1
		-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결정에 학생 의 견 반영여부	26-2	32-2	
		- 급식메뉴와 질에 학생 의견 반영여부	26-3	32-3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29	35	4-1-2-3
	4-1-3. 사회에서의 의견존중	- 청소년 정책에 대해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32-1	39-1	4-1-3-1
		- 지역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시 청소년 의견 반영여부	32-2	39-2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 - 대중매체의 부정적 역할	33-1 33-2 33-3	40-1 40-2 40-3	4-1-3-2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 취향의 표현	- 학교에서 두발 등 용모 규제 경험과 대응태도 - 학교에서의 복장 규제 경험과 대응태도	30-1 30-2	36-1 36-2	4-2-1-1
	4-2-2.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	-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 권 보장 정도 -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 가능여부	26-5 26-6	32-5 32-6	4-2-2-2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 - 인터넷에서 댓글 작성 경험	34-1 34-2	41-1 41-2	4-2-3-1
4-3. 집회·결 사의 자유	4-3-1.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도	26-12	32-13	4-3-1-2
		학생회 운영 현황 - 학생 자율권 정도 -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 -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 여부 -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 여부	- 27-1 27-2 27-3	33-1 33-2 33-3 33-4	4-3-1-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28	34	4-3-1-4
		학교에서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	38	4-3-1-5
		청소년 정책관련 자치기구에 대한 인지 도와 참여경험	35	42	4-3-2-1
	4-3-2. 사회에서의 집회·결사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 토론 - 모임이나 카페 가입 -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 서명운동	36-1 36-2 36-3 36-4	43-1 43-2 43-3 43-4	4-3-2-2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	44	
4-4. 사상·양 심·종교 및 사생활 의 자유	4-4-1.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	-	32-7	4-4-1-3
	4-4-2. 사생활 보호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여부 -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여부 - 징계대상 학생 정보 공개 여부 - 개인 시험성적 공개 여부	26-7 26-8 26-9	32-8 32-9 32-10	4-4-2-1
		학교에서 개인 소지품 검사 경험과 대응태도	30-3	36-3	4-4-2-2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	31	37	

4-5. 정보 접근권	4-5-3.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공지 책임 이행정도 - 학생생활규정, 자치규정 등 인지도	26-10 26-11	32-11 32-12	4-5-3-1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권정보 제공정도 - 청소년용 정책자료 제공 여부 - 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공 여부 -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여부 - 인권교육 실시 여부	37-1 37-2 37-3 37-4	45-1 45-2 45-3 45-4	4-5-3-2
4-6. 사회참 여 및 참정권	4-6-1.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 횟수 자원봉사 참여 시간 자원봉사 참여 이유	38-1 38-2 39	46-1 46-2 47	4-6-1-1
	4-6-2. 참정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초등: 선거 가능연령 시 선거참여 의향	40	48	4-6-2-2
4-7. 참여관련 인식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	41	49	4-7-0-1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42	50	
		참여의 장애요인	43	51	4-7-0-2
		참여 활성화 방안	44	52	4-7-0-4
		청소년인권 옹호 기구 필요성	45	53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46	54	4-7-0-5

4. 조사표본 및 조사설계

본 실태조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객관적인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 횡단 자료의 수집을 통해 연속적인 자료의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인권변화 수준의 시계열적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인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준 대비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보호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정책 방안의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국제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환경 조성과 인권의식에 대한 긍정적 확산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이 중요 국가통계자료 구축 목적과 그 적합성을 인정받아 국가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청승인을

2009년 6월24일에 취득할 수 있었다. 본 조사의 통계작성을 위해 승인된 승인번호는 Nr. 40201이며, 2009년 생존권과 보호권영역에서의 조사에 이어 올해에는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래에는 본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및 표본설계 명세서가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1) 모집단

(1) 목표모집단

-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조사대상자로 한정함.

(2) 조사모집단

- 이 조사의 조사모집단은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조사대상자로 함. 제주도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조사모집단에서 제외함.

(3) 모집단 층화

-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12개 시도별 학생수를 구분한 후에 각 시도의 학생 현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함.

<표 1-7> 시도별 조사모집단 총화를 위한 통계들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초등학교	초4-6학년	초4	586,343	101,993	36,021	30,945	33,149	20,820	19,423	15,173	150,787	17,833	43,095	45,617
			(100)	17.4	6.1	5.3	5.7	3.6	3.3	2.6	25.7	3.0	7.3	7.8
		초5	604,803	105,217	37,952	31,544	34,013	21,848	20,375	15,914	154,070	18,530	44,935	47,650
			(100)	17.4	6.3	5.2	5.6	3.6	3.4	2.6	25.5	3.1	7.4	7.9
		초6	633,055	111,224	40,170	34,350	36,341	22,993	21,234	16,807	158,941	19,089	46,362	48,998
			(100)	17.6	6.3	5.4	5.7	3.6	3.4	2.7	25.1	3.0	7.3	7.7
중학교	중1-3학년	중1	648,244	114,630	43,557	35,692	37,109	23,003	21,998	17,415	160,098	19,395	47,095	50,379
			(100)	17.7	6.7	5.5	5.7	3.5	3.4	2.7	24.7	3.0	7.3	7.8
		중2	668,278	119,529	45,339	37,601	38,768	23,937	22,716	18,125	163,239	19,796	47,831	51,730
			(100)	17.9	6.8	5.6	5.8	3.6	3.4	2.7	24.4	3.0	7.2	7.7
		중3	665,078	121,679	46,080	37,156	39,321	23,531	22,211	18,085	161,319	19,414	46,959	50,775
			(100)	18.3	6.9	5.6	5.9	3.5	3.3	2.7	24.3	2.9	7.1	7.6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 부설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	일반 고1-3학년	일반 고1	502,171	102,059	34,775	29,230	30,152	17,882	18,134	14,019	119,392	11,185	33,962	33,917
			(100)	20.3	6.9	5.8	6.0	3.6	3.6	2.8	23.8	2.2	6.8	6.8
		일반 고2	495,493	103,144	34,994	29,194	30,179	17,392	18,052	14,040	114,726	10,909	33,008	33,514
			(100)	20.8	7.1	5.9	6.1	3.5	3.6	2.8	23.2	2.2	6.7	6.8
		일반 고3	471,953	101,400	33,915	28,120	28,414	16,196	17,015	13,516	107,096	10,382	30,713	31,295
			(100)	21.5	7.2	6.0	6.0	3.4	3.6	2.9	22.7	2.2	6.5	6.6
	전문 고1-3학년	전문 고1	159,722	20,363	11,991	7,827	8,640	5,384	4,037	3,860	38,738	8,232	13,472	16,673
			(100)	12.7	7.5	4.9	5.4	3.4	2.5	2.4	24.3	5.2	8.4	10.4
		전문 고2	158,017	20,377	12,459	7,977	8,530	5,161	3,792	3,600	38,917	8,152	12,667	16,225
			(100)	12.9	7.9	5.0	5.4	3.3	2.4	2.3	24.6	5.2	8.0	10.3
		전문 고3	155,000	20,732	12,489	7,897	8,467	5,074	3,901	3,629	38,028	7,823	12,082	15,360
			(100)	13.4	8.1	5.1	5.5	3.3	2.5	2.3	24.5	5.0	7.8	9.9
합계	-	-	574,157	1,042,347	389,742	317,533	333,083	203,221	192,888	154,183	1,405,351	170,740	412,181	442,133

※ 2009년 교육통계연보에서 제시된 현황표에 기초하여 작성했음.

<표 1-8> 시도별 조사모집단 총화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구분	표본수		교급별 표본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초등학교	초4-6 학년 (2809)	초4	867	151	53	46	49	31	29	22	223	26	64	67
			(100)	17.4	6.1	5.3	5.7	3.6	3.3	2.6	25.7	3.0	7.3	7.8
		초5	894	156	56	47	50	32	30	24	228	27	66	70
			(100)	17.4	6.3	5.2	5.6	3.6	3.4	2.6	25.5	3.1	7.4	7.9
		초6	936	164	59	51	54	34	31	25	235	28	69	72
			(100)	17.6	6.3	5.4	5.7	3.6	3.4	2.7	25.1	3.0	7.3	7.7
중학교	중1-3 학년 (2968)	중1	959	170	64	53	55	34	33	26	237	29	70	74
			(100)	17.7	6.7	5.5	5.7	3.5	3.4	2.7	24.7	3.0	7.3	7.8
		중2	988	177	67	56	57	35	34	27	241	29	71	76
			(100)	17.9	6.8	5.6	5.8	3.6	3.4	2.7	24.4	3.0	7.2	7.7
		중3	983	180	68	55	58	35	33	27	239	29	69	75
			(100)	18.3	6.9	5.6	5.9	3.5	3.3	2.7	24.3	2.9	7.1	7.6
고등학교 (방통 고, 산업체 부설학 교 등 특수학 교 제외)	일반 고1-3 학년 (2055)	일반고1	743	151	51	43	45	26	27	21	177	17	50	50
			(100)	20.3	6.9	5.8	6.0	3.6	3.6	2.8	23.8	2.2	6.8	6.8
		일반고2	733	153	52	43	45	26	27	21	170	16	49	50
			(100)	20.8	7.1	5.9	6.1	3.5	3.6	2.8	23.2	2.2	6.7	6.8
		일반고3	698	150	50	42	42	24	25	20	158	15	45	46
			(100)	21.5	7.2	6.0	6.0	3.4	3.6	2.9	22.7	2.2	6.5	6.6
	전문 고1-3 학년 (701)	전문고1	236	30	18	12	13	8	6	6	57	12	20	25
			(100)	12.7	7.5	4.9	5.4	3.4	2.5	2.4	24.3	5.2	8.4	10.4
		전문고2	234	30	18	12	13	8	6	5	58	12	19	24
			(100)	12.9	7.9	5.0	5.4	3.3	2.4	2.3	24.6	5.2	8.0	10.3
		전문고3	229	31	18	12	13	8	6	5	56	12	18	23
			(100)	13.4	8.1	5.1	5.5	3.3	2.5	2.3	24.5	5.0	7.8	9.9
합계	-	-	8,500	1,541	576	470	493	301	285	228	2,078	252	610	654

<표 1-9>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구분	표본수		교급별 학급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급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초등학교	초4-6 학년 (2809)	초4	30	5	2	2	2	1	1	1	7	1	2	2
			(100)	16.7	6.7	6.7	6.7	3.3	3.3	3.3	23.3	3.3	6.7	6.7
		초5	31	5	2	2	2	1	1	1	7	1	2	3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초6	31	5	2	2	2	1	1	1	7	1	2	3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중학교	중1-3 학년 (2968)	중1	31	5	2	2	2	1	1	1	7	1	2	3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중2	34	6	2	2	2	2	1	1	7	1	3	3
			(100)	17.6	5.9	5.9	5.9	5.9	2.9	2.9	20.6	2.9	8.8	8.8
		중3	32	6	2	2	2	1	1	1	7	1	2	3
			(100)	18.8	6.3	6.3	6.3	3.1	3.1	3.1	21.9	3.1	6.3	9.4
고등학교 (방통 고, 산업체 부설학 교 등 특수학 교 제외)	일반고 1-3학 년 (2055)	일반고1	28	5	2	2	2	1	1	1	6	1	2	2
			(100)	17.9	7.1	7.1	7.1	3.6	3.6	3.6	21.4	3.6	7.1	7.1
		일반고2	27	5	2	2	2	1	1	1	5	1	2	2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일반고3	27	5	2	2	2	1	1	1	5	1	2	2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전문고 1-3학 년 (701)	전문고1	13	1	1	1	1	1	1	1	2	1	1	1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전문고2	13	1	1	1	1	1	1	1	2	1	1	1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전문고3	13	1	1	1	1	1	1	1	2	1	1	1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합계	-	-	310	50	21	21	21	13	12	12	64	12	22	26

<표 1-10>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구분	표본수		교급별 학생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초등 학교	초4-6 학년 (2809)	초4	1,050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70
			(100)	16.7	6.7	6.7	6.7	3.3	3.3	3.3	23.3	3.3	6.7	6.7
		초5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초6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중학교	중1-3 학년 (2968)	중1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중2	1,190	210	70	70	70	70	35	35	245	35	105	105
			(100)	17.6	5.9	5.9	5.9	5.9	2.9	2.9	20.6	2.9	8.8	8.8
		중3	1,120	210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00)	18.8	6.3	6.3	6.3	3.1	3.1	3.1	21.9	3.1	6.3	9.4
고등학 교(방통 교, 산 업 체 부설학 교 등 특수학 교 제외)	일반 고1-3 학년 (2055)	일반고1	980	175	70	70	70	35	35	35	210	35	70	70
			(100)	17.9	7.1	7.1	7.1	3.6	3.6	3.6	21.4	3.6	7.1	7.1
		일반고2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일반고3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전문 고1-3 학년 (701)	전문고1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전문고2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전문고3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합계	-	-	10,850	1,750	735	735	735	455	420	420	2,240	420	770	910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 이 조사의 표본크기는 전국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계산함.

<표 1-11> 표본크기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제주도 제외)	모집단 합계 (제주도 제외)		목표표본수	
초등학교	초4-6 학년	초4	586,343	1,824,201 (31.7%)		2,698	
		초5	604,803				
		초6	633,055				
중학교	중1-3 학년	중1	648,244	1,981,600 (34.5%)		2,930	
		중2	668,278				
		중3	665,078				
고등학교(방통고, 산업체부 설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	일반고 1-3 학년	일반 고1	502,171	1,469, 617 (25.6%)	1,942, 356 (33.8%)	2,173	2,872
		일반 고2	495,493				
		일반 고3	471,953				
	전문고 1-3 학년	전문 고1	159,722	472,739 (8.2%)		699	
		전문 고2	158,017				
		전문 고3	155,000				
합계	-	-	-	5,748,157 (100.0%)	8,500 (100.0%)		

○ 표본크기의 결정 및 배분

- (1) 이 조사는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의 부분 과제이며, 전체 통합

조사의 측면에서 이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는 8,533으로 결정되었음.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63\%P$ 임(다음
'3) 모수추정' 참조).

- (2) 각 부차모집단별 비례배분에 의하여 목표 표본수(학생수)를 할당함
(<표 1-2> 및 <표 2> 참조).
- (3)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명임을 가정하여 목표 학급수를 할당함
(<표 1-3> 참조). 학급: 일차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
- (4) 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을 조사한다는 원칙 하에서 각 부차모집단별
예상되는 최종 학생수는 <표 1-4>와 같음. 학생: 이차추출단위(SSU;
secondary sampling unit). 따라서 예상되는 최종 표본크기는 10,815이
며,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45\%P$ 임(다
음 '3) 모수추정' 참조)

3) 표집방법(중간보고서 참조)

4) 모수추정

(1)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의 구분에 따른 번호.

학교구분 : 4개(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고등학교, 전문고 고등학교).

지역 :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
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즉, Y_{hij} 는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의 j 번째 학생에 대한 관측치임.

- w_{hij} : 표본 가중치 (표본추출확률의 역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w_{hij} = (\pi_{hi}\pi_{jhi})^{-1}$
 - π_{hi} = h 번째 층에서 i 번째 집락의 추출확률이며, 이는 집락 내의 학생 수에 비례함.
 - π_{j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에서 j 번째 학생의 추출확률.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2)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 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_{\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_{\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3)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4)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bar{e}_{h..}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5)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6) 목표 오차한계(표본오차)

- 집락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 목표: $N=5,800,890$, $n=8,533 \Rightarrow e=\pm 1.06\%P$

- 최종: $N=5,800,890$, $n=10,815 \Rightarrow e=\pm 0.94\%P$
- 대략 $M=35$ (집락크기), $\rho=0.04$ (급내상관계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의 경우)로 간주하여, $deff = 1 + (M-1)\rho=2.36$ 을 단순임의추출에 대한 집락추출의 설계효과로 하고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times \sqrt{deff}$$

- 목표: $N=5,800,890$, $n=8,533 \Rightarrow e=\pm 1.63\%P$
- 최종: $N=5,800,890$, $n=10,815 \Rightarrow e=\pm 1.45\%P$

5) 무응답의 처리

○ 단위 무응답

- 단위 무응답: 질문지 전체를 무응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표본의 교체를 통하여 이를 해결함.
- 본 조사에서는 단위 무응답이 발생하면 초기 표본에 있는 결측 단위를 초기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표본층 내의 다른 단위로 교체하여 처음 표본의 크기와 같게 해줌. 특히 단위 무응답에 대한 표본 단위의 교체 시 랜덤하게 초기 표본과 동일한 자료수집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하여 이미 표본에 있는 다른 단위와 유사한 것으로 교체되도록 함.

○ 항목 무응답

- 항목 무응답: 질문지의 특정 문항이나 항목을 무응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유사한 특성의 값을 대체시키는 것이 통계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
- 무응답 대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극단치 제거 후 평균 대체’를 이용한 대체 방법을 사용할 것임(여기서 극단치의 기준은 ‘극단치=제3사분위수+1.5×(제3사분위수-제1사분위수)’

또는 ‘중앙값+1.5×(제3사분위수-제1사분위수)’을 사용함). 다만, 필요한 경우 주요 변수들에 대하여 단순 평균 대체, 다중 대체, 극단치 제거 후 평균 대체 등을 검토한 후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무응답 대체를 실시함.

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교급별 설문조사 실시

5. 조사결과

1) 분석방법

- 다양한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주요 측정변수(세부지표항목)에 대한 사회집단 수준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 즉 중요 인구통계학적 주요 변인인 성별, 학교 급별, 성적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별 등의 사회집단별 수준에 따른 중요 측정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함.
- 통계적 분석 방법의 틀로서는 변수의 종류와 수 그리고 분석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등을 알맞게 사용함

2)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1-12> 조사대상자의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명)		2,581	3,189	3,821
성별	남성	1,321	1,661	1,899
	여성	1,258	1,526	1,921
	무응답	2	2	1
교급	초등학교	2,581	0	0
	중학교	0	3,189	0
	고등학교	0	0	3,821
거주지	서울	427	551	572
	광역시	720	895	1,375
	시군	1,434	1,743	1,874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2,341	2,780	3,156
	한부모 가정	201	329	560
	조손 가정	18	39	51
	기타	21	41	54
가정의 경제적수준	상	1,402	1,157	1,008
	중	992	1,461	1,666
	하	170	556	1,143
	무응답	17	15	4

3) 아동청소년 발달권 실태분석

-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관련 실태에 대한 성별, 학교 급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별 등의 변인별 차이 분석

4)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분석

- 생존권 세부지표항목의 주요 세부지표항목에 대한 성별, 학교 급별, 가족유형별, 경제수준별 등의 변인별 차이 분석

Ⅱ . 아동의 발달권·참여권 정책방안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부교수)

아동기는 인간발달의 한 과정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발달적 존재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성장할 것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으로 적시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성인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자로 규정하고 아동의 역량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촉구하였다. 이는 아동기의 발달양상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수동적 존재이고 성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Unicef, 2005)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국가들은 2002년 27회 아동특별총회에서 제12조 즉 아동참여의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아동의견의 개진과 존중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여전히 오래된 관행과 태도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김영지, 2010).

아동의 역량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의 아동정책이나 부모의 아동양육이 아동의 발달 특성과 발달적 역량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게 되는 발달적 손상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화해 준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을 아동에게 마련해 주어야 이들이 갖고 있는 발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환경적 요소가 아동의 잠재적 발달 가능성을 위협하는가? 아동의 역량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으려면 어느 수준의 보호가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와 그들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동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아동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Unicef(2005)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려면 아동을 발달적 존재, 참여적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본 장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참여와 관련한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환경을 짚어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모든 아동에게 실행할 수 있을지의 방안을 모색한다. 아동의 발달과 참여를 일상적인 삶과 각종 생활의 장, 다양한 의사결정의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 환경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환경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 요약할 수 있다.

1)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 미흡한 이행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2008년 3,4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중 3,4차 통합 국가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5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을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체 예산대비 아동예산 비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관련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16.21%이지만 이 예산항목을 제외한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을 합친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0.007%에 불과하다.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전체 국가예산의 0.001%이다. 유럽보육위원회(ECNC)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GDP대비 1%수준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47%(육아정책개발센터, 2008)에 불

과하다(황옥경, 2009).

3,4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공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는 공교육비 부담을 늘려왔다.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은 2004년부터 전면 실시되었고 2008년부터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고등학교 교육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2004년 7% 수준(12만 4,000천명)이었던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을 2008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10% 수준(17만 5,000천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육재정 공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08).

한편으로 2008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88.8%, 중학생 74.6%, 고등학생 55%가 학원 등 사교육을 받고 있어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8).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부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아동의 참여와 관련된 법과 정책이 아동권리 중 가장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2007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생 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된 것은 아동참여의 발전적 변화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0조의 ‘보호조치시 아동의 의사 존중’의 경우처럼 아동참여는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과정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아동의 의사를 청취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황옥경, 2009).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아동 징계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입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아동 의견 존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초·중등교육 교과과정의 운영규칙과 10대 청소년이 만든 인터넷게시판이 정

부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위원회는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 과학기술부 지침, 학교운영규칙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표 2-1참조).

<표 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및 과제

Cluster	2차 권고사항	이행상황
일반 이행조치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을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관련 예산의 증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통계 수집체계가 미비 함.	·매년 5월 ‘청소년 통계’ ·아동권리지표 개발
아동의 정의	·남녀초혼 연령차이 동일화(민법의 혼인적령의 남녀차이)	·2007년 11월 민법개정을 통해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
일반원칙	·아동견해존중을 위해 관련법률 제 개정 및 제도 개선.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시 아동의 의사 존중 (2004년 개정)
	·부모, 교육자, 사회일반 등을 대상으로 아동참여권에 대한 교육적 정보제공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6조 권리교육과 홍보 조항 2005년 신설되었음
	·징계과정에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증진	·200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생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이 기회 부여하도록 명시 함.
기초보건과 복지	·저소득층 대상 무료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의료급여 실시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학교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비율을 100% 높이려고 추진 중
교육	·공교육수준 향상/ 무상교육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2007년 학교 급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 410.1만원, 중학교 445.4만원,

		고등학교 592.3만원 ·2004년. 2월.에.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
--	--	---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관련 기관들의 아동 참여신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체계적이지 않다. 아동의 참여는 주로 아동관련 기관들의 아동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연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된 경우는 거의 없다(황옥경, 2010). 월드비전의 각 지역 아동청소년권리센터의 권리위원들의 모니터링 활동이 있지만 이 역시 상시수준의 체계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있다(안동현, 2009). 보건사회연구원산하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옴부즈키즈는 아동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경우이지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아동기에 대한 인식 부족

아동기는 인간발달과정 중에서도 발달이 가장 빠르고 삶에서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아동기 발달적 손상은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책 대상자로서 아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은 매우 취약하다. 저출산의 파고에 아동 개개인의 역량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는 근래조차도 아동정책은 정책개발 및 실행의 핵심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업무의 통합과 분할과정에서 아동정책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을 생각해 볼 때, 전체 아동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도권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회적 태도는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하다. 더더구나 아동의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동이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정치적인 힘이 부족하여 아동정

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자조하는 현실은 아동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의 현주소이자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기·황옥경·송미령·김지인, 2008).

우리나라 아동정책 속에서 아동은 영유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그 어느 정책 대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존재이다. 따라서 보육과 유아교육에 집중된 영유아 정책과 문제행동의 해결에 집중된 청소년기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어 왔다. 아동은 완전한 성인에 의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보육대상도 못 되었고, 행동문제의 소인을 갖고는 있지만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이 청소년에 비해 덜한 것으로 비추어 지면서 이들의 행동, 정서상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도 못하였다(황옥경, 2009).

3) 아동참여에 대한 인식 결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기관, 법정, 행정당국, 입법기관이 아동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활동 과정에 여러 단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procedural right)와 유사하다. 아동권리협약은 회원국이 이런 활동을 책임지는 자들이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계는 의무적이다(아동권리위원회, 2009, 김영지 2010년 재인용).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서비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소외되어 있다. 심리학적, 생물학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아동에 대한 인식은 대다수 국가가 아동의 문화적 세계 즉 놀이나 친구관계 등으로 제한된 영역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을 성인과는 다른 존재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아동이 성인의 행동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아동자신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 그리고 자율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사회에서 조차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 때문이다. 이것은 아동의 자율성을 개발할 기회를 감소시키며, 이런 의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은 자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이재연·황옥경·박은미·이은주·강현아, 2008).

4) 아동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의 취약함

2008은 아동청소년 담당 정부부처의 통합논의로 아동정책이 표류해 있었다. 결국 2009년 아동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 통합되었으나 통합 1년 만인 2010년 3월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고 아동업무만 보건복지부에 남게 되어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다시 분리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정책은 더 이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래 2003년 보건복지부에 아동정책과가 신설되기 까지 아동 전담 정부부처가 부재하였다. 아동업무는 1970년대까지는 ‘부녀아동국’의 ‘아동과’가 담당하였으며, 1980년대는 ‘아동복지과’가 있었으나 영유아 보육법의 실시 이후 보육사업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몇 년간 ‘보육아동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8년부터 아동복지업무와 보육업무가 통합되어 ‘아동보건복지과’로 개편되었고, 아동복지 업무와 보육업무가 분리되면서 2002년 사회복지정책실 산하로 ‘가정·아동복지과’와 ‘보육과’로 분리 개편되었다.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맞물려 2003년부터 현재의 아동정책과가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황옥경, 아동권리학회, .아동정책 전달체계 분석-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2010년 현재 보건복지부 직제를 보면, 인구아동정책관 산하부서로 아동복지과와 아동권리과 두 개의 과가 실제적인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이

다. 우리나라 아동인구가 2009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8,746천 명 중 0~18세까지의 아동인구가 10,90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2.4%에 해당되는 것을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정부구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교육부 전신으로 2010년 5월까지 상존해 있던 아동, 학교, 가족부가 6개국 즉 아동과 가족(Children and Families) 학교(Schools), 청소년(Young People), 의사소통(Communications), 협조체계구축 서비스(Corporate Services), 법적관리(Legal Director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직원이 4,000명 정도이었던 것을 볼 때(황옥경, 2009)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부서와 인력 수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동담당 정부부처가 얼마나 취약한 지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국가기구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책연구기관이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권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의 보건과 복지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으며, 아동을 전담하는 연구부서가 없다. 육아정책개발연구소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연구대상이 미취학아동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2.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

1) 국가 아동정책과 아동지표의 부재

2007년까지 아동정책체계는 3개 대책과 총 154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2-2). 국무조정실이 2002년 5월 ‘어린이 보호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종합계획은 어린이 권리 증진, 어린이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어린이 안전강화,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어린이 보호, 어린이 교육, 육성 등 5개 중점 분야별 4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조정실 안전관계 개선기획단은 2003년 6월 7대분야 58개 과제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빈부격차, 차별시정 위원회에서 2004년 7월 수립한 ”빈곤아동, 청소년

년 종합대책“ 은 6개 과제, 45개 사업이 계획·추진되었다(황옥경, 2009)

<표 2-2> 2008년까지의 아동정책 체계

대 책	추진과제
어린이 보호·육성 대책	1. 어린이 권리영역(7) 2. 어린이보건복지서비스지원(8) 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5) 4. 어린이 교육·육성(9) 5. 아동관련 국제협약(3)
어린이 안전대책	1. 교통안전(16) 2. 익사사고 대책(5) 3. 추락사고, 화재·약물·용품 등 사고대책(16) 4.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28) 5. 아동학대 및 폭력, 미아찾기, 불량식품 방지 대책(11)
빈곤아동·청소년 대책	1.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8) 2. 빈곤아동·청소년 건강 성장 보장(10) 3. 균등교육·보육기회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8) 4.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5) 5.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내실화(6) 6. 빈곤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9)

이후 3대 아동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는 중장기 아동정책(보건복지부, 2008)으로 출판되었다. 이러한 작업에 기초하여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대 정책을 포괄하는 보다 발전적인 아동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단행하였으나 이 시기가 아동과 청소년 담당부처의 조정과정과 겹쳐 연구성과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결국 2009년 아동과 청소년업무가 통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다시 아동과 청소년 업무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아동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엔아동특총에서 결의된 국가아동행동계획을 유엔에 보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08년 이후 국가가 제시하는 아동정책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 국가차원의 아동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그동안 촉구되어 왔다. 국가 아동정책의 목표와 세부 실행지표가 공표되어야 한다(황옥경, 2009).

국가가 제시하는 아동발달 비전을 공고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동발달 목표가 지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아동정책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성과지표는 여전히 취약하다. 2008년 정부가 제출한 3, 4차 보고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3, 4차 통합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의 정책성과를 제시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보고 내용은 정책실행의 목표와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조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의 성과지표는 장단기 포함하여 11개에 불과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는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각 지표에 대한 기준선을 알 수 있는 통계의 산출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황옥경, 2009). 이런 맥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전문 분야의 통계수집 체계가 미미함”을 지적하고 “통계 수집 제도 마련 및 통계를 활용한 아동정책의 수립,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Every Child Matters:Change for Children』는 아동과청소년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5가지 구체적인 국가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건강하기 (Be Healthy)’, ‘안전하게 생활하기(Stay Safe)’, ‘즐겁게 배우기(Enjoy and Achieve)’,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Make a Positive Contribution)’, ‘경제적인 역량 갖추기 (Achieve Economic Well-being)’로 아동과 청소년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목표에 대해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웨스트민스터시의 경우, ‘즐겁게배우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¹⁾

1)웨스트민스터시의 성과지표 중 몇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2) 정책의 다양성 부족 및 정부부처 간 산발적인 정책 시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이나 아동정책은 아동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소극적인 환경에 개입하는 것을 지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미래의 주인공(becoming)’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뿐, 현재 한 사람(being)이자 한 시민으로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결과는 아동정책의 효율성 문제와 인간 소외의 문제 그리고 아동정책의 편협성을 야기했다(이재연·황옥경·이은주, 2008).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여전히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라는 소극적, 잔여적 대책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 (윤혜미, 2002; 이태수, 2001; 박정란·서홍란, 2001; 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5)을 받아왔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자체가 요보호 아동의 보호에만 치중하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소극적인 정부의 역할 속에서도 유지되어올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의 증대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아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종래의 요

1. 2008년 여름학기까지 14세 아동의 77%가 영어과목 핵심단계 3에서 5+ 수준을 달성함. 수학과목에서는 77%의 아동이, 과학과목에서는 73%의 아동이 이 같은 수준을 달성함.
2. 2009년 여름까지 16세 아동의 55%가 GCSE에서 5개 이상 A* -C 등급을 받음.
3. 2008/09까지 보호관리 종료 시 LAC(보호관리아동)중 80%가 최소 1개의 A*-G 등급을 받음
4. 중등학교 결성은 2008년까지 전반적으로 6.5% 감소함.
5. 2008/09까지 수업일수 25일 이상 결석하는 LAC(보호관리아동)의 수는 10% 미만임
6. 정학 및 퇴학률은 2007년까지 10% 감소함(2005년도 기준)
7. 2008/09까지 웨스트민스터 초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학생들 중 87%가 중등학교로 진학함.
8. 2008/09까지 8개월 이상 언어치료(SLT)진단을 기다리는 초등학생은 없도록 함.
9. 2008/09까지 SEN(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 need))의 93%가 18주 이내로 완료됨
10. 2008/09까지 유년기 유아교육 환경의 100%가 전공자들로부터 (외견·정보·제한 등을) 제공받음.

보호 아동 중심의 아동정책에서의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요구를 지닌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아동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동은 그들의 부모자녀관계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ldren's Society, 2008).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아동양육 지원 책자의 공급, 애착발달 등과 같은 정책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수인 친구관계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또래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학교평가 등의 아동정책이 없다. 놀이시간 및 안전한 놀이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아동기 놀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아동 삶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놀이를 국가정책화해서 발달시켜나가고 있는 영국의 사례(Play council, 2008; DCSF, 2008)를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정책이 부처간 산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를 보면 1세아 양육수당, 조손가족의 자녀 5만원의 양육수당, 급식 지원 등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분산 실행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지원에 대해 각기 다른 전달체계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는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양 만큼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중복수혜의 문제 또한 있다.

3) 아동기에 대한 저조한 투자 : 부족한 예산

아동문제를 논할 때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는 언제나 거론되는 주된 논의의 주제이다. 아동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GDP대비 0.01%에 불과하다. 정부 전체예산에서 아동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예산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이며 선진국의 1/7~1/100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8년도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약 8,800원²⁾ 아동아 및 가족대상 지출은 공공사

회지출 대비 1.7%로 나타나 북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1/10수준에 불과하며 OECD국가 중에서 최저수준이다(이재연, 2010).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에 대한 예산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평등이 염려된다. 2005년도부터 아동복지관련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이 일부 혹은 전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³⁾. 지방재정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에 따라 동일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게 상이한 양과 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출산장려금 지급, 셋째자녀아 지원 등이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산상의 한계와 인력배치의 문제는 아동정책 개발 및 실행의 한계를 가져온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었다.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한 조기개입 기반 마련, 아동통합서비스 체제 구축,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의료보호의 확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수 확대 등의 요청은 언제나 인력과 예산상의 고려로 정책으로 진화하지 못하였다.

현 아동정책이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 예산분석이 필요하다.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효율성,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관련 연구에서는 예산이라는 방대한 작업의 어려움 상 아동관련 예산의 분석 연구는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종종 사회복지예산 대비 아동관련 예산의 규모나 외국과의 아동복지비의 비교정도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아동에게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아동정책과 국가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가 되었다. 이는 아동관련 정책을 관련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이승기 외 2008).

아동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주요한 국가투자의 대상이

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예산에 국한 된 것으로 지방이양사업과 타부처 아동관련 예산 포함되지 않았다.

3) 입양기관 일부사업(입양기관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일부사업(지방가정위탁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부사업(지방·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아동시설 운영 일부사업(아동복지시설 운영), 가정위탁양육지원 전체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 전체사업, 아동급식지원 전체사업, 결연기관운영 전체사업, 퇴소아동정착금 전체사업.

다. 여기서 투자는 아동의 발달을 위한 총체적인 재정지원의 의미로서 1962년부터 실시한 Perry Preschool 연구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 \$1당 \$16.14의 환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시카고 Child-Parent Centers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 \$1당 \$7.14의 투자 환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저출산고령화사회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영유아기에 대한 집중투자가 미래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 및 빈곤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보고들은 선진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진 각국은 개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황옥경, 2010).

2010년 영국의 DCSF(2010)의 보고에 따르면 6세부터 15세까지 1인당 아동에게 소요되는 국가비용은 153, 687파운드인데 비해 0세 영아부터 15세까지는 42,243파운드에 불과 함을 발견하였다. 교육, 의료, 레저 등 아동기 투자 비용이 높을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의 연간수입이 상승하였다. 특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수입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국가경제상태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DCSF, 2010).

4) 위기개입 위주의 아동정책: 아동참여의 소외

현행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위기개입위주의 선별적, 잔여적 성격이 현저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모든 아동 참여를 신장시킬 만한 정책은 거의 없다. 가족구성과 경제수준에 따라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행복감, 그리고 생활만족도 등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

신체발달을 담보 받을 수 있는 발달검사 등이 충실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제도도 검사결과에의 사후조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청력검사 등 아동의 발달이상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검사가 제외되어 있어 그 실행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책의 선택과 집중, 다양성 간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영향 평가 시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황옥경, 2009).

영국정부는 건강정책을 통해서 역량있는 아동청소년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빈곤문제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 정부는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건강서비스의 불평등 해소이다. *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 (2004)은 아동과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이 최상의 삶을 제공받고 그들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서비스는 장애아동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등이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7년 12월 영국정부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아동, 학교, 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아동 건강전략(child health strategy)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아동의 참여권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있는 정책은 더욱 취약하다. 아동의 참여에 대한 이와 같은 폭 넓은 해석은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 제27회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결과 문서 - 에 반영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의 가정, 학교, 지역 및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겠다”(para. 32, subpara 1)고 약속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실행에 관한 종합대책에 대한 일반 논평 5번에서 “정부가 비정부기구나 인권기구 등의 중재를 통해서만 아니라 아동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08년 3, 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부모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이 아동참여권에 대한 최근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이다.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5개국 인권실태 조사결과, 청소년 참여권 보장수준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중국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3.9%), 스웨덴

(47.9%), 한국(27.2%), 일본(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영지 외, 2008).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4.7%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이 49.3%로 최대치를 보이며 참여권 보장 수준이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황옥경과 이호균(2006)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은 참여요구는 강하게 나타났다.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93.0%에 이르렀다. 89.3%의 아동들은 지역사회나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 개발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64.3%) 자신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동들이 참여하기 원하는 영역은 보호 및 안전관련 영역이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관련 영역, 지역사회 개발 관련 영역 순이었다. 자신의 의견을 내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아동들은 아동참여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서비스전달체계의 한계

현행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그 동안 연구자들은 아동통합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민간의존도가 높은 아동보호서비스를 공적부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주장해 왔다. 이 문제는 그동안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여러 연구(오정수 외, 2006; 이승기 외, 2008; 황옥경, 2007) 뿐 만 아니라 아동보호서비스 실천기관의 종사자들 간 에도 제기되어 왔다. 이 두 가지 맥락의 논의를 근거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전달체계의 추진주체가 없다. 지방정부의 아동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보호아동 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민간전문기관과 아동관련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

비스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스타트,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난립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복지 업무를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책임의 혼란, 업무연계와 협력체계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오정수 외, 2005).

현행 아동복지 전달체계는 다양한 전달체계의 구심점이 되는 중심축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모든 과정의 추진주체는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아동보호 서비스의 추진주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어떤 흐름으로 보호체계가 가동될 수 있을지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추진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안별 지원요청은 각 사례에 대해 관련기관간의 책임의 분배를 통한 역할의 전문성과 집중이 불가능하다. 일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관련기관간의 개별적인 협약체결 형태의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개별 센터의 역량에 달려있는 현실이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인이 될 수도 있다.

둘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사례관리(접수-욕구사정-통합서비스 제공-사후관리) 수행을 위한 단계적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즉 아동보호서비스의 추진주체는 공공성을 확보한 기관 즉 지방정부 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민간기관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개입은 개인생활 보호 및 부모의 권한과 책임 등과 맞물려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아동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의 업무상 한계가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서비스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정보공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간의

통합서비스 즉 연계체계 구축을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통합서비스 체계가 마련되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아동을 발견하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위험상황에 놓인 아동 즉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각 센터를 중심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만 신고, 접수되는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당한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아동을 발견하기 어렵다. 방임 아동이 처하는 위기는 신고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합서비스체계가 어떻게 확대, 발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가족을 판별해내고 이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서비스 개입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위험에 처한 아동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해지면 아동보호서비스의 필수요건인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황옥경, 2002; 황옥경, 2009).

3.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정책 방안

앞서의 문제점을 근거로 향후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아동정책의 수립

국가차원의 아동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아동의 성장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아동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 정책은 한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를 반영한다.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사회적 약자내지는 소수 집단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회의 주류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아동정책을

지향하며, 아동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사회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황옥경, 2009).

2008년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규모의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는 국가 아동정책의 목표와 세부 실행지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가차원의 아동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은 국가가 아동정책 수행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중앙정부의 아동정책의 비전과 목표 및 하위 달성 지표들은 곧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아동정책의 틀 안에서 각 지역의 아동정책 실행지표가 설정될 수 있으며 이의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달성지표의 내용은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로써 각 부처의 아동정책의 산발적 실행, 정책의 분절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되는 일관적이면서 체계적인 아동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아동정책 실천도 가능하다. 아동법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아동정책의 목표와 달성해야 할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아동정책 및 서비스를 실행, 평가하고 있는 영국의 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발달주기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0세부터 5세, 6-11세, 12-17세를 한 축으로 하고 각 발달주기를 망라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0-5세까지는 생의 초기경험의 동질성과 공평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건강 및 놀이 그리고 신체 및 예술활동 등과 관련된 정책이 있을 것이다. 6-11세까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12-17세까지는 학교와 지역사회연계 및 자기성취와 진로지도, 성인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영역별 발달과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아동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전 과정에 가족지원관련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황옥경, 2010).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국은 정책수립의 모든 과정 및 실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에게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영국 아동청소년 정책 10년 계획에서 명시되어 있다.

2) 국가 아동지표 및 정책 성과지표의 확립

아동정책이 수립되면 각 정책의 목표를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아동 지표와 이에 대한 성과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수준을 확인하고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지표를 선정하고 성취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한국의 아동지표(보건복지부, 2006) 연구와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연구를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이 두 연구는 모두 와 같이 아동연구 및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의 아동지표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상태에 대한 단순 통계지표이며,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연구는 아동의 발달상태와 발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아동지표 연구는 기존 통계자료를 아동지표에 맞게 재생산·해석한 자료이며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연구는 전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였다.

두 연구결과는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데 아쉽게도 이후 연구결과가 반영된 아동정책 수립이라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두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지표 및 개별지표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다. 두 연구에서 산출된 자료로 국가아동지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연구의 연계가 가능할 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수집과 보다 효율적인 중장기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발 및 성과지표의 산출이 가능

해 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각 지방정부에도 요구된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정책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기본요건이다.

3) ‘아동참여’에 대한 논의 공론화 및 체계화

아동이 관여하는 분야는 보건, 경제, 교육, 환경 등 폭이 넓으며 이런 분야들은 아동 개인뿐 아니라 아동 그룹들과 아동 전체에 관계된 분야들이다. 결과적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참여라는 개념을 폭 넓게 해석하여 아동 개인이나 특정 아동 그룹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조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아동들을 위한 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2의 32,33,34에 의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2항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에 대한 해석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규정이 아동에게 관련된 모든 사법적 절차,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아동양육권, 아동보호와 입양, 법을 어긴 아동, 신체적 심리적 폭력, 성적 학대, 기타 범죄피해 아동, 보건의료(health care),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동반자 없는 아동(unaccompanied children), 난민요청 및 피난민 아동, 무력충돌 및 기타 비상사태의 희생자 등에 대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전형적인 행정절차에는 아동의 교육, 건강, 환경, 생활환경, 보호 등에 대한 의사결정까지도 포함된다.

의견표명권은 학대에 대한 아동의 고소나 학교 퇴학에 대한 아동의 호소 등과 같이 아동이 제기한 절차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과 같이 아동에게 관련되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절차에도 적용된다. 회원국가는 사법, 행정 절차의 의사결정자들이 아동에게 아동의 의사가 고려되는 수준과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만들 법적 조치를 도입

하도록 권고 받는다.

특히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은 효과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데 주목하고 사법·행정 절차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동에게 친근한 정보, 자기변호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적절하게 훈련 받은 직원, 법정 디자인, 재판과 변호사들의 의복, 시야 가리기, 독립된 대기실 등을 제공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일반논평 12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의사를 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은 아동에게 자신에게 관련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아동에게 있으며 특히 사법적,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표명의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표현된 의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자기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표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환경은 일방적인 조사보다는 대화의 형식이어야 하고 아동을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기보다는 비밀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동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피드백을 통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가는 다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제12조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유보조항을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폭 넓은 권한을 가진 아동 옴부즈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돌보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종사원, 시 공무원, 정부 공무원, 시설 담당자, 전통적 지도자 등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에 대한 제12조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의 자기 의견표명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아동의 의사가 법과 기관의 규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규정과 여러 장치에 의해 존중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규정과 장치들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오피니언 리더와 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중 캠페인을 통해 아동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통상적인 관념을 바꾸어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완전한 실현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 태도에 대항한다.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아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이혼과 별거, 그리고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을 원가족에서 분리하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아동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는 소년사법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아동 범죄 피해자와 증인이 조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공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사건에 대한 견해 및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아동의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무엇보다 아동이 학교 정책과 행동 지침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급회의(class councils), 학생회의(student councils), 학교 이사회나 위원회의 학생 대표직 등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교육당국, 학교 혹은 교장의 의지에 따라 실행되기 보다는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김영지(2010)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과정에 아동 참여(Get ready for Geneva Project : 아동이 직접 작성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제출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프리세션 회의 참석, 아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등 미디어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운동), Young Equals(아동·청소년 연령차별 반대 캠페인), You've got the Right(인권훈련, 인권변호인단의 법률 자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가정내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

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였다.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가정 내 긍정적 훈육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제12조는 구체적으로 아동이 아동에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를 밝힐 권리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활동과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리에 관련이 있다. 제12조는 회원국에게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필요한 법적 틀과 방법을 도입할 의무와 표출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지운다.

4) 아동정책조정기구 활동 재개

아동이 관여하는 분야는 보건, 경제, 교육, 환경 등 영역이 다양하며 영역 간의 연계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에 따라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07년까지 운영하였다. 이 기구는 상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을 갖추지 못하였고, 회의가 정례화 되지 못하고 개최된 회의도 너무 적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6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중 업무추진보고를 위한 회의를 제외한다면 아동정책을 논의한 회의는 연 1회~2회에 불과하고, 서면(e-mail)으로 회의가 대체된 경우도 있다.

더욱이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 담당 부처가 일원화 되었다가 2010년 3월 아동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다시 분리,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혼란기 상태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다른 기구의 설치가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현재 발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였다. 2008년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작업의 하나였던 아동청소년관련법률 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아동정책조정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책, 즉 아동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상설기구화하고 이 기구에 권한, 재정, 인적·물적 자원을 부여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정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기구의 신속한 운영재개가 요구된다(이재연, 2010).

5)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의 설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폭 넓은 권한을 가진 아동 옴부즈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설립할 것을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권고해 왔다. 우리나라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2006년 10월 24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범사업의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08년부터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고 아동과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의 와중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산하의 옴부즈퍼슨 제도가 2009년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2010년 옴부즈퍼슨 등의 임명을 포함 운영이 재개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여전히 위탁 형태로 존재한다. 위탁형식을 통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은 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의 문제와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재연·황옥경·김효진, 2009).

아동모니터링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요청에 의한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현재의 위탁운영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위탁형태의 운영이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탁운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모든 유형의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아동들의

자발적 참여 또한 저조하다.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그 존재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현재 법적기반에 근거하여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권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아동권리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권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현재 정부에 의한 위탁형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업무는 상당부분 정부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그 동안 **WFFC**보고서,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하였다. 반면 센터의 본래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아동권리침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직원은 현재 센터 소장 1인, 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인력인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임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인력구조로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야하며 어떠한 권한을 주어야 할지에 대하여 정부는 아동권리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기능과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맨 사무국이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당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이재연 외, 2009).

6) 아동 담당 부서의 확대 및 핵심연구 연구기관 설립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아동현실을 정확하게 반

영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행정체계를 구비하는 작업일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아동정책의 이념을 적절히 수용해 낼 수 있는 아동담당부서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배경을 다음의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아동권리 보호, 둘째, 보편주의 서비스 지향, 셋째, 아동정책의 업무추진의 효과성은 아동정책을 전달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아동권리 보호여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동의가 있고, 아동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이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효과성은 정책 수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황옥경, 2005).

특히 아동정책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전반적 아동의 삶과 지위(state)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혹은 아동관련 지표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동권리현황에 관한 종합적 보고가 가능하도록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모든 아동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양상을 보이며, 역량 또한 다양하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역량은 아동자신의 경험, 자신에 대한 기대, 사회적 상황,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 자신이 소유한 경제적 역량, 신체적 건강 상태 등에 의해 역량을 평가받는 어른과 달리 아동의 역량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질에 따라 다르다.

아동의 발달을 적극지원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그리고 의시표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처한 환경의 변화를 도모

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모든 아동의 발달을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지표를 선정하고 성취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국가아동정책을 토대로 계획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적 역량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아동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먼저,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돌보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종사원, 시 공무원, 정부 공무원, 시설 담당자, 전통적 지도자 등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제12조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자기 의견표명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아동의 의사가 법과 기관의 규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규정과 여러 장치에 의해 존중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규정과 장치들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와 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중 캠페인을 통해 아동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통상적인 관념을 바꾸어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완전한 실현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 태도에 대항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보고자료.
- 김영지(2010). '참여'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참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 12.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2008). 국제기준대비 한국청소년 인권수준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 안동현(2009). 한국아동학회춘계토론문.
- 이봉주 외(2006a). 2006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이봉주 외(2006b).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이봉주·황옥경(2005). 『아동정책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이봉주·곽금주·구인회·김인화·김선숙·김지현·김혜란·박혜준·신혜은·윤명희·이강이·이광호·이순형·정익중·전미경(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승기·황옥경(2008).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보건복지부.
- 이재연·황옥경·김효진(2009). 『아동권리』. 한국아동학회.
- 이재연·박은미·황옥경·김형모·이은주·강현아(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 이재연·황옥경·이은주(2008).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시 꿈나무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서울복지재단.
- 황옥경(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아시아아동의 과거, 현재, 미래」. 아동권리포럼 자료집, 한국아동권리학회, 일본아동권리종합연구소 공동주최.
- 황옥경(2002).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황옥경(2003).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움부즈맨 수립방안」. 아동권리연구, 제7권 1호. pp. 1-24. 서울 : 한국아동권리학회.
- 황옥경(2005). 「아동정책 전달체계분석-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2005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53-75.
- 황옥경(2009a). 「한국아동의 삶의 현주소」에 대한 토론. 한국아동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황옥경(2009b). 『사회속의 아동』. 창지사.

- 황옥경(2010). 「아동권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린이재단 포럼.
- 황옥경·이호균(2006). 국가행동계획, 중장기아동정책과 국가행동 계획 연구 중 국가 행동계획 연구 부분. 보건복지부 .
- 황옥경·정준미(2006a). 『아동의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옥경·정준미(2006b).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옥경(2010). 「아동에 대한 교회 지원의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http://www.childrenssociety.org.uk/all_about_us/who_we_are/our_church_partnership/4335.html, 2010. 9.25일 검색.
- Children's Play Council(2006). Planning for play-guidance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local play strategy. London: Children's Play Council. Department for
-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7). *The Children's Plan: Building brighter futures*. London: DCSF.
- DCSF(2010). *Early Intervention*, HMSO.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2008). *Play strategy-play for life*. London: DCSF Publications.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a). Fair play: A consultation on the play strategy. London: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b). *Statutory guidance to Children's Trust*. London: DCSF.
- Reynolds, A. J., Temple, J. A., Robertson, D. L., & Mann, E. A(2002). Age 21 cost-benefit analysis of the Title, Chicago Child-Parent Center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4: 267-303.
- Schweinhart, L. J., Montie, J., Xiang, Z., Barnett, W. S., Belfield, C. R., & Nores, M..(2005). Lifetime effec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 The children's Society(2009). *A Good Childhood*, Penguin Books,
- UN Children's Rights Committee(2009). General Comment, No.12, Child to be Heard, 김 영지, (2010)'참여'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참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 12,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Unicef(2005). *Laying the Foundation for Children's Rights*. Innocenti Publications.

Ⅲ.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과제와 추후 방향모색

김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의 현황

아동·청소년 참여는 아동·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Hart, 1997; Winter, 1997)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참여를 성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내재된 본질적인 욕구로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도 점점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가정, 지역사회, 학교, 공공정책, 사회 등에서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진정하고 의미 있는 참여(authentic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UNICEF, 2002).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을 독립된 영역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은 사회 전반의 인식과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청소년정책 중 가장 진전의 속도가 느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여·야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의 정부 등장과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비로소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¹⁾. 2003년 참여정부의 등장과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은 더욱 진전하여 보호 육성의 대상에서 성인과 파트너십을 가진 참여의 주체로 청소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²⁾. 2004년 개정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청소년 참여보장을 명시하였고,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특별회의를 제도화 하였다. 동년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의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의 참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청소년활동진

- 1)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시민권 신장 등을 청소년의 자율참여확대를 위해 제시하였다.
- 2) 참여정부 대통령인수위의 ‘새 정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좌표’의 기초를 이어 받아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는 수립 시부터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정책과 시설에서의 청소년참여 보장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청소년 관련 법 개정과 제정에서 이런 원칙이 제도로 규정되었다.

홍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명문화 하였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관련 정책추진체계도 정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참여개발팀(참여·인권팀)을 설치하였다(김헌태 외, 2006).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참여·인권팀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내 청소년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 참여권 관련 정책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청소년의 사회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보고,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 확대와 운영 개선, 청소년 참여활동 거점 공간 지정·운영과 확대, 지역사회·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여건 강화, 국제적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연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16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약 3,2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258개의 청소년시설에서 약 3,800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에는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 약 400명이 참여하여 시·도별 지역회의 토론을 거쳐 35개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 전국의 아동대표 약 150명이 아동총회를 열어 ‘우리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이런 제도권 안에서의 참여 외에도 아동·청소년들은 다양한 비제도권 속에서의 참여활동을 통해서 인권으로서 참여권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촛불집회, 온라인 상의 다양한 카페활동과 토론, 청소년 NGO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의 문제점

1) 아동·청소년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아동·청소년 참여는 인권 차원의 가치를 지닌다. 사회성과 정치성을 본성으로 지닌 인간이면 누구나 본래적인 욕구로 참여 지향성을 가지며 참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치공동체의 참여과정에서 배제되게 되면 인간으로서 존재감과 가치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참여는 인권으로서 위상을 가지며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도 중요하며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참여의 가치는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참여는 아동·청소년을 성장·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참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시민으로서 역량을 증진하게 된다. 교육기체로서 참여의 가치는 일찍부터 참여민주주의자들이 강조해온 것이다(Barber, 1984; Dewey, 1916; Pateman, 1970; Rousseau, 1964, 이환 역 1999; Thompson, 1970). 또한 참여는 사회자원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이 지닌 에너지와 역량을 투입하여 사회발전과 변화를 추동하는 가치를 가진다.

우리 사회의 정책가나 기성세대는 아동·청소년 참여의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이 보인다. 아동·청소년 참여 현황에서 보았듯이 아동·청소년 참여 관련 정책 추진부서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행정부 들어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 참여가 지니는 가치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미흡한 인식 때문이라 생각한다. 물론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정책가들의 인식 수준은 사회 일반의 인식 수준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 관련 제도와 행사 등을 마련해 놓고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사회 일반에서는 아직도 아동·청소년은 미숙하고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자원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보다는 결핍과 문제로서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경향은 실태 조사의 결과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초등학생 46.3%, 중고등학생 73.0%,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초등학생 48.1%, 중고등학생 77.2%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식은 사람의 가치판단과 행동을 좌우하며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

풍토와 문화, 제도의 성립과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청소년 참여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참여 가치의 인정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성 세대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실태조사 결과 사회 편견을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는 중고등학생이 63.0%에 이를 정도로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참여의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 인식 개선과 부모님 협조를 초등학교 56.6%, 중고등학생 45.3%로 들고 있는 점도 아동·청소년 참여를 위해서는 성인들의 인식이 중요하고 현재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참여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미흡

아동·청소년이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인권을 실현하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려면 참여 경로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경로와 제도를 갖추어 놓아도 일반 아동·청소년이 이를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1998년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 참여제도와 경로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아동·청소년은 이를 알고 있지 못하다. 참여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이 초등학교 79.3%, 중고등학생 75.7%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정보 부족’을 들고 있는 비율이 초등학교 40.3%, 중고등학생 75.2%, 청소년용 정책자료 제공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상의 비율이 초등학교 74.0%, 중고등학생 79.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공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초등학교 85.8%, 중고등학생 87.0%, 권리침해 시 상담 구제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초등학교 57.0%, 중고등학생 77.1%, 청소년 정책관련 자치기구에 대해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의 비율이 각각 초등학교 24.7%, 50.5%, 중고등학생이 21.7%, 64.3%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난 점은 아동·청소년이 참여 제도와 경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나타낸다.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권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 이상의 비율이 초등학생 63.9%, 중고등학생 73.5%로 나타난 것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참여를 위한 교육, 참여를 통한 교육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여에는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공공선을 중시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 이런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어 갈 때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터인데, 이에 관한 체계적인 참여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의 비제도적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 부족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크게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참여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 등을 통한 선거참여, 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와 같은 정책참여 등과 같이 법과 같은 규범에 의해 정형화되고 공식화되어 있는 참여유형을 일컫는다. 반면 비제도적 참여는 인터넷 참여와 토론, 거리에서의 집회와 시위 등과 같이 어떤 규범에 의해 정형화되고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참여유형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제도적 참여는 비제도적 참여에 비해 심리적 부담이나 경제적인 비용이 적게 든다(이승중,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구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전통적인 제도적 참여유형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제도적인 참여유형에 대한 관심과 실제 참여가 커지고 있다(Bennett, 2007).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예는 촛불집회,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결사체 형성과 토론 활성화 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촛불집회나 인터넷에서의 결사체 형성과 표현은 헌법상 보장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다. 단,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점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제도적 참여에 대해서 공권력을 통한 억압, 미디어를 통한 일방적인 훈계나 매도 이외의 정부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워 불필요한 긴장과 자원의

소모가 나타나기도 한다.

4)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다양한 부문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국가 정책과 사회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대부분 성인 중심의 기성세대가 하며, 이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경험도 성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자원도 대부분 성인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성인들의 안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있어서 성인과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을 중시하여 Hart(1992)는 성인 참여 없이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7단계)보다는 청소년이 주도하되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8단계)를 청소년 참여 사다리의 가장 높은 단계로 설정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참여정책의 현실을 보면 성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대간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협력체계 구축의 부족은 학교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이 학생인 현실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실현을 위해서 학교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 많은 참여 거리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 모색에 있어 고민을 하는 민간기업과도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아동·청소년 생활세계에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 부족

아동·청소년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나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

는 의사결정이나 사안은 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과 같은 생활세계에서 일어난다. 아동·청소년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간·주체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 UNICEF(2003)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할수록 참여기회는 사적공간에서 공적공간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전 지구촌으로 확대되어간다고 한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정책을 보면 예전부터 행해져 온 사회봉사활동과 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지자체의 참여위원회, 최근에 도입된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지만,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생활세계에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은 부족한 편이다.

6) 아동·청소년 참여의 국제 교류 체계 구축 미흡

오늘날 지구촌화 흐름에 따라 각 나라와 문화권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호 발전에 도움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일찍부터 발달한 서구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EU의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영국의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국민투표에 대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고안된 The Regional Referendum Great North Youth Vote 프로그램,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Involving Young People in the Electoral Process 프로그램,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하려는 York Central 프로그램, 미국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는 Youth Service America, 청소년의 참여 리더십 형성을 지향하는 Activism 2000 project,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Youth for Justice,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를 위한 San Francisco Youth Commission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나라들과 아동·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국제 교류 체계를 구축하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다.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의 개선방안

1) 청소년정책담당자, 청소년지도자,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권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청소년정책담당자가 아동·청소년참여를 인권 차원에서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참여를 통해서 시민역량을 계발하고 사회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담당자의 연수나 교육에는 반드시 아동·청소년 참여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정책담당자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나 체도를 탐구하게 하고 우수한 탐구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닌 참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는 청소년시민역량·참여팀(과), 지방에서는 청소년시민역량·참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현직 연수에 있어 참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우호적인 풍토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참여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참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활용하거나, 국민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 저명 인사들을 아동·청소년 참여권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회 여론 주도층을 교육하게 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2) 참여 정보의 제공과 참여를 통한 교육의 활성화

참여 정보에 관련된 실태조사의 결과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참여에 관한 정책과 제도, 경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실제 참여 행동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다음 단계의 판단과 행동을 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형 책자나 e-팜플렛 등을 만들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지역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시설/단체 등을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만을 통해서 참여 정보를 아동·청소년에게 인지시키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체계를 통해서 참여 정보를 전파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학습하는 교육과정에 중요한 참여에 관한 정책과 제도, 경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정책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의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 개편 시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참여 정보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 참여 관련한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참여가 지닌 교육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참여는 인권으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기제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참여의 교육기제를 살린 대표적인 예가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이다.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에서는 막연하게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과정에서 시민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적 설계를 한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participation)를 하도록 한다. 참여를 하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 있지만, 참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을 성장, 발달시키는 일은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참여를 통한 교육은 프레이리(Freire)의 성인문해교육모델을 청소년에게 적용한 EE 모델(Empowerment Educational Model)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EE 모델은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경청(listening)-대화(dialogue)-행동(action)-성찰(reflection)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능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Jennings, et al, 2006).

이외에 참여를 통한 교육은 참여리서치프로그램(participatory research program), 참여리더십학교(Youth Participatory Leadership Academy) 등을 통해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시간대(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참여리더십학교를 개설하여 서비스러닝, 참여리서치프로그램,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여리더십학교는 학교의 방과후활동과 연계할 수도 있다. 중앙의 정부부처에서는 정책 지원을 하고, 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 각 지역의 성공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박람회 장에 아동·청소년 참여 부스를 설치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전시하고 참여에 관련된 각 종 정보를 알리는 것도 한 방안이다.

3) 아동·청소년 참여 친화적인 지방자치단체(도시) 모델 형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아동·청소년이 심리적·물리적으로 볼 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단위이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시장 또는 시의회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프로그램(the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역 수준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2001년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200여개의 도시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아동·청소년 참여 친화 도시들이 매년 대회를 열어 아동·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공유하고 가장 우수한 활동을 벌인 도시에 상을 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아동·청소년 권리를 위한 시장’ 운동(‘mayors for child rights’ movement)을 펼치기도 하고, 분쟁지역인 팔레스타인지역에서도 아동·청소년 활동 센터(Child Activity Centres)를 두어 아동·청소년 참여 친화 도시 모델을 만들고 있다(UNICEF, 2003).

이런 외국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참여 친화 도시 모델 정책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별로 거점 도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아동·청소년 참여 친화 도시 모델 정책을 실시하여 우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를 다른 도시로 확대 가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참여 친화 도시 모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요소로 참여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위원회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 군수)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청소년위원회(San Francisco Youth Commission)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문성호, 2006). 이외에 자치법규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두어야 한다. 청소년의회는 의회민주주의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참여의 장이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청소년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이 의견을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4) 세대간, 부문간 아동·청소년 참여 협력 체계

아동·청소년 참여는 아동·청소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효과적이지도 않다. 아동·청소년 참여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국가, 세계 차원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과 세대, 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세대간 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참여 단계 중 청소년이 주도하되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를 최고의 단계로 Hart가 설정한 것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과 함께

하는 참여를 통해서 성인이 가진 경험과 지식, 아동·청소년이 가진 창의성과 에너지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성인, 아동·청소년이 함께 하는 공동의사결정 모델, 공동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또, 참여 멘토링제를 도입해서 참여를 매개로 성인 또는 선배의 경험과 지식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생이어서 학교교육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학교교육정책과 분리된 청소년정책만으로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한계가 있다. 청소년참여권에 관련된 정책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수록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정책부와 학교교육정책부서의 유기적인 정책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로,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학교-청소년 시설-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을 구안, 운영하면서 학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각각으로 하여금 협력체제 속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1 기업 1 참여프로그램 후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도 이런 시대정신을 수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청소년의 참여와 연계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하여금 하나의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 후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기업과 청소년단체가 공동으로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가정은 아동·청소년이 처음으로 참여경험을 하는 곳이다. 가정에서의 참여경험은 이후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가족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로 전환되면서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보급이 이전보다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5) 밑으로부터 정책 참여 활성화와 비제도권 참여 수렴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해 두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청소년특별회의와 참여위원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또는 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일반 청소년들이 선출하고, 그 활동 과정에서 자신들을 선출한 일반 청소년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소통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민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 또는 이들 대표들에 다시 선출된 대표들을 청소년특별회의 또는 참여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참여기구의 대표성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에너지를 정책에 투입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요구를 제도권으로 수렴함으로써 청소년 참여가 비제도권으로 급진화 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밑으로부터 참여를 활성화 하고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수준의 토론회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급별로 토론회를 나누고(초등, 중고등, 대학 등), 밑으로부터 예선 대회를 거쳐 전국 수준의 본 대회를 치르게 하면 청소년들의 토론과 의사소통능력을 기함과 동시에 다양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비제도권 참여가 활성화 되어 국가나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비제도권 참여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비제도권 참여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비합리성 등은 불필요한 사회자원의 낭비와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밑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와 요구를 표출하고 모을 수 있는 제도권 참여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제도권에서 집회와 토론을 일정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청소년 집회와 토론의 광장을 보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너무 엄격하지 않은 조

건을 주고 이 조건을 지키면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이 광장에서 집회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회와 토론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웹 2.0을 기반으로 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웹 2.0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확산·공유하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기성세대 이상의 참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은 시대의 대세로서 막을 수 없다. 국가는 웹 2.0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참여가 순기능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웹 상에서 지켜야 하는 시민윤리에 대해 교육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웹 2.0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모니터링 체제는 인터넷 상의 청소년참여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인터넷 상의 청소년참여가 지니는 순기능을 최대화 하고 역기능을 최소화 하며, 청소년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청소년정책으로 수렴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아동 · 청소년 참여 관련 국제 교류 활성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아동 · 청소년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과 아동 · 청소년 참여 관련 국제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교류를 통해서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활동을 알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적인 아동 ·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과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 참여 관련 국제회의나 발표회에 참석하는 것,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국제 아동 · 청소년 참여 대회 또는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대회나 발표회에 아동 ·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는 경우, 이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 많은 청소년들이 밑으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문헌

- 김헌태, 김영인, 고원, 허동원(2006). 『미래예측을 위한 청소년 참여·인권 환경 및 정책 분석』.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 문성호(2006).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확대방안의 모색」. 『청소년학연구』 13(6), pp. 201~219.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이승중 (1997).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사.
- Barber, Benjamin R.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Bennett, W. L.(2007). "Civic learning in changing democracies : challenges for citizenship and civic education". Dahlgren, P. ed. *Young Citizens and New Media*. New York: Routledge. pp. 59~78.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흥우 역 (1991).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New York: UNICEF.
- Jennings, L. B., Parra-Medina, De. M., Messias, De. K. H., & McLoughlin, K.(2006). Toward a Critical Social Theory of Youth Empowerment. In B. N. Checkoway & L. M. Gutierrez ed. *Youth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hange*. New York : The Haworth Press. pp. 31~56.
-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Rousseau, J. J.(1964). *Du Contrat Social*. Paris: Gallimard. 이환 역(1999). 『사회계약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Thompson, Dennis F. (1970). *The Democratic Citize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UNICEF(2003).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3. New York: UNICEF.
- Winter, Micha de(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cliffe Medical Press.

IV. 청소년 발달권 · 참여권 지표개발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1. 서론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 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년차 과제로서, 인권영역 중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토대의 구축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년차까지 지속되었을 만큼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진행된 이 연구는 기간 많은 성과물들을 내어 왔으나 다양한 문제점 또한 노정하였다. 5년차를 정리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과거 연구의 궤적을 간단히 되살펴 보면,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152개 항목의 청소년종합인권지표 체계를 개발하였고, 사업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전체 4개영역의 핵심 정성지표 항목을 중심으로 63개 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한국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3차년도인 2008년에는 1,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하는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2009년 4차년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영역에서 총 34개의 새로운 지표항목이 추가로 발굴·보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4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구(생존권 46문항, 보호권 84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올해 연구에서는 전체 4개 영역으로 분류된 인권체계 중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을 함께 묶어 주요 지표의 추가 산출을 통해 133문항(청소년용 기준)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실시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변화양상과 인권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 5년간 많은 연구성과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노정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첫째, 기개발된 지표들, 특히 조사문항들로 이루어진 정

성지표들은 얼마 만큼의 학문적 고민을 담아내고 있는가, 둘째 “위의 지표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정책지향적 연구가 학문적 철저함을 갖지 못한다면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효용은 의심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적 연구가 실제 현실에서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엘리트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정책적 실효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표관련 연구, 그 가운데서 특히 종합적 지표체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관련 통계의 단순 나열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들을 하나의 보고서에 종합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의의가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과연 전체적인 종합지표의 틀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제시된 자료에 대한 독자들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만약 그 독자가 실제 정책의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정책적 개입의 지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 다룰 내용들을 소개하자면 먼저 발달권과 참여권 정량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다. 검토의 지점은 어떻게 하면 행정자료 내지는 과거 조사자료들을 나열하는 식의 지표체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시키도록 한다. 다음으로 발달권과 참여권 정성지표, 즉 조사문항 및 결과들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한다. 검토의 지점은 크게 조사문항들의 측정속성에 대한 검증과 지표로서의 조사결과 활용방안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언차원에서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들의 지수화 방안을 언급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본론

1)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체계의 의의 및 기능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 보편성(universality)과 비양도성(inalienability), 비분리성(indivisibility), 독립성(interdependence)과 상호 연관성(interrelatedness), 평등(equa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참여(participation)와 통합(inclusion), 그리고 책임성(accountability)과 법치성(the rule of law)을 그 특징으로 한다(UNDP, 2007).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발달권과 생존권도 이 같은 인권의 6대 원칙에 근거해서 그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다른 유형의 권리(예: 생존 및 보호권)와 마찬가지로 발달권이나 보호권에 대한 정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권을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발달단계 있는 시기적 특성을 감안한 ‘특수성’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그 개념이나 정의가 달라진다. 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동의 생존 및 보호권은 성인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청소년이 보호의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로 정의된다. 반면, 후자의 관점에서 생존 및 보호권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상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 권리의 주체보다는 수동적인 보호의 객체로서 가지는 권리로 정의된다.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관련 지표와 달리 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표는 다소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환경이 그것인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님과 동시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모니터링하며 협약의 관점에서 국내적 실천과 관행에 대한 검토의 의무를 지고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지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이러한 권리협약 이행 자체 또는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제공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권리협약이 정부에 요구하는 의무사항

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아동권리지표라는 기준을 이용할 때 보다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계열 비교 등에서 활용 시 효율성이 높다(서문희·안현애, 2003).

아동·청소년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각각의 지표체계들은 아래와 같다. 각각의 지표체계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발달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성장주기에 따라 각 발달과정의 과업수행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권리로 정의된다. 광범위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청소년 발달의 영역은 인지, 정서, 사회, 직업, 그리고 신체적 영역¹⁾으로 나뉘게 되며 정량지표 또한 이러한 구분에 의해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참여권은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되고 있다. 발달권과 달리 참여권 지표체계는 하위권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관심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1) 각각의 발달에 대하여 간략한 정의를 부여하자면 먼저 인지적 발달이란 사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과정이 점진적·순차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지는 변화를 의미하며 정서적 발달은 적절한 정서적 행동을 얻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신의 감정통제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적 발달은 부모와, 형제, 동료, 교사 그리고 다른 성인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직업적 발달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발달은 매일의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피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표 4-1>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 지표체계

관심 영역	세부관심 영역	개별지표항목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3-1-1-1. 취학률 3-1-1-2A. 중퇴율 3-1-1-2B. 학교등교거부이유 3-1-1-3. 대학진학률 3-1-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3-1-1-5.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 3-1-1-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3-1-1-7. 하루 평균 학습시간 · 교원1인당 학생수 · 학습부진아 출현율
	3-1-2. 인지능력	3-1-2-2. 창의성 지수 3-1-2-3. 문제해결능력 지수 3-1-2-4.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 한달 평균 여가활동시간 · 여가활동 만족도 3-2-1-6.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 3-2-1-7. 고민유형과 고민상담 3-2-1-8. 부모·자녀관계
	3-2-2. 정서적 안정	3-2-2-1. 우울증 지수 · 청소년 자살률 3-2-2-2. 스트레스 지수(학업) 3-2-2-3. 행복(심리적 안정) 지수 3-2-2-4. 자존감 수준 3-2-2-5. 자기 효능감 3-2-2-6. 정서 조절감 3-2-2-7. 정서적 고립감 3-2-2-8. 낙관성 3-2-2-9. 학교생활의 적응

<표 4-2 > 참여권의 핵심 세부지표항목 및 대표적 정량지표 항목

관심 영역	세부관심 영역	개별지표항목	문항번호		분석 대상
			초등	중·고	
4-1.자기 결정권 (=청소년 의견존 중)과 사생활 보호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V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V
		4-1-1-3.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	32-7)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25-1)	31-1)	
		4-1-2-2.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V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비율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25-2)	31-2)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25-3)	31-3)	
	4-1-4. 문화·여 가 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V
	+4-1-5.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4-1-5-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6-7) 26-8) 26-9)	32-8) 32-9) 32-10)	
		+4-1-5-2.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	30- 3) 31	36- 3) 37	
4-2.표현 의 자유	4-2-1. 사적취향 의 표현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30- 1) 30- 2)	36- 1) 36- 2)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V
	4-2-2. 학교에서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26-5)	32-5)	

관심 영역	세부관심 영역	개별지표항목	문항번호		분석 대상
			초등	중·고	
	의 의견 표현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29	35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26-6)	32-6)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1.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2. 인터넷 이용 표현활동	34- 1) 34- 2)	41- 1) 41- 2)	
	+4-2-4.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4-2-4-1.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33- 1) 33- 2) 33- 3	40- 1) 40- 2) 40- 3)	
4-3. 집회·결 사의 자유	4-3-1. 학교에서 의 집회·결 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V
		4-3-1-2.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26-12)	32-13)	
	4-3-2.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 사	4-3-2-1.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	38	
		+4-3-2-2.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36- 1) 36- 2) 36- 3) 36- 4)	43- 1) 43- 2) 43- 3) 43- 4)	
		+4-3-2-3.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	-	44	
4-4. 정보접 근권 및 정보참	4-4-1. 도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V
		4-4-1-2.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V

관심 영역	세부관심 영역	개별지표항목	문항번호		분석 대상
			초등	중·고	
여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V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한 비율			V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V
	+4-4-3. 알권리	4-4-3-1.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 정도	26- 10)	32- 11)	
			26- 11)	32- 12)	
		4-4-3-2.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37- 1)	45- 1)	
			37- 2)	45- 2)	
4-5. 사회참 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38- 1)	46- 1)	
			38- 2)	46- 2)	
			39	47	
		4-5-1-2.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V
		4-5-1-3. 청(소)년 실업률			V
		4-5-1-4.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V
	4-5-2. 학교에서 의 참여	4-5-1-5A. 청소년 정책참여 동아리 참여율	35	42	
		+4-5-1-5B.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 정도	32- 1)	39- 1)	
			32- 2)	39- 2)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비율	- 27- 1)	33- 1)	
			1)	33-	

관심 영역	세부관심 영역	개별지표항목	문항번호		분석 대상
			초등	중·고	
			27-2) 27-3) 33-3) 33-4)	2) 33-3) 33-4)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26-4)	32-4)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28	34	
		+4-5-2-4.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 정도	26-1) 26-2) 26-3)	32-1) 32-2) 32-3)	
	4-5-3. 참정권	4-5-3-1.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V
		+4-5-3-2.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선거 참여 의향	40	48	
+4-7. 참여관련 인식		4-7-0-1. 참여 의의와 필요성	41 42	49 50	
		4-7-0-2. 참여의 장애	43	51	
		4-7-0-3. 참여 효과			V
		4-7-0-4. 참여 활성화 방안	44 45	52 53	
		4-7-0-5.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46	54	

위의 지표체계에 근거하여 개별 지표들에 대하여 지표의 의미를 제공하고 다음으로 관련통계 및 현황을 제시 한 후 관련 정책과 대안을 공통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표에 대한 원론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이 연구는 2006년부터 무려 5년여의 기간을 통하여 진행되어온 작업이고 따라서 지금쯤은 과연 이

연구가 과거 설정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시점이며 이 연구의 다양한 목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아닌 지표의 구성과 그것의 목적달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표에 대한 원론적 논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지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지표를 사회의 중요한 조건에 관한 지수(index)로서 계량화된 자료로 정의하는 반면, 다른 이는 정책차원에서의 지표의 기능을 강조하며 정책의 형성, 분석평가를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통계 및 측정자료로, 또 어떤 이는 지표를 성과측정치(performance measure)와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가 일반적으로 산출과 성과의 변화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측정이 용이하여 성과를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후자는 활동 또는 산출과 성과간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측정이 어렵고 성과가 간접적이고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박소희, 2008).

이렇듯 다양한 지표에 대한 개념정의들을 관통하는 것은 지표란 ‘현상에 대한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통계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표가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생산된 수치는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치화 하여 변화를 보여줄 수 없다면 추상적 탁상공론에 머무를 뿐이고 반면에 아무리 수치화된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면 그 수치들은 그저 숫자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표의 개발과 이에 대한 분석은 귀납적이자 동시에 연역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영역에서도 이러한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²⁾.

2) 청소년 영역의 지표개발을 위한 초기 작업들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1995, 1997)의 『한국의 청소년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환경 및 의식의 현황과 그 변화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계량화된 척도로서, 실제적인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그렇다면 청소년영역에서의 지표개발은 애당초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 각주를 통해서도 제시하였다고 한국의 청소년관련 지표의 개발은 민간영역 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청소년지표는 정부정책의 일환이었고 따라서 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과학적 수립과 효율적 집행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졌던 것이다.

이를 정책의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지표는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발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 지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국가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정책적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개발지표를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객관적 데이

지표』는 최초의 체계화된 청소년관련 지표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공식통계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와 그 변화양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연구의 활성화와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사회지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한국청소년개발원(1998)의 『청소년정책평가지표체계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자치단체별로 청소년정책의 노력성 정도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통계청의 『청소년통계』는 청소년의 인구, 교육, 문화, 범죄등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청소년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01년 국무조정실 지정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부터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청소년인권관련지표에 대한 국내연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2001)의 『청소년인권지표개발연구』는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행 정도와 인권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청소년인권지표 개발보다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인권지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정의가 부족하고, 청소년인권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지표들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객관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인권지표는 8개 분야, 15개 관심영역, 37개 세부관심영역, 142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에 의한 체계적·과학적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실태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하위체제들은 무수히 많지만, 이들 하위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보원의 부재는 국가청소년정책의 계획 및 실행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청소년지표는 청소년개발체제의 투입 및 과정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셋째, 청소년 지표는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지속적인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단적 분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표는 청소년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치의 단순한 평면적 또는 시계열적 나열만으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정책의 효과에 의해서만 입증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지표간의 인과적 모형의 설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에도 청소년 지표는 다양한 활용지점을 갖는다. 먼저 양질의 청소년 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통계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치를 동시에 제시해 준다. 따라서, 지역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지역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을 위한 여건과 인프라의 구축의 현황에는 많이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지표를 통하여 지자체의 청소년 및 그들을 둘러싼 제반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집중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지표는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도 활

용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지표는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특성화·전문화 및 프로그램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추세에 기초한 특성화·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은 현재 청소년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청소년지표는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의 특성화전략 수립과 타겟그룹(target group) 설정,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지표는 청소년개발 관련 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특성화·전문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 및 민간의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지표는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청소년지표에 대한 일반론적인 사항들을 이 연구의 주제인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에 적용시켜 보자면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정량지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의 실현을 위한 의무당사자의 의무이행 정도를 명확하게 평가하여 이른바 권리정책의 성과측정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인식을 평가하기 위한 정성지표와는 달리 정량지표는 객관적인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향유 실태와 정도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정량지표의 결과는 추후 권리정책의 개선과 변화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는 권리보장 혹은 권리침해의 정도나 심각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특정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권리침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권리지표는 권리와 쌍방적 관계에 있는 의무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

동·청소년의 발달 및 참여권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어 구성된 정량지표는 권리보장의 정도나 권리침해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의 정량지표들이 위와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냈을 때 비로소 권리보장의 주된 의무당사자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인권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아동 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체계 검토

(1) patchwork식 통계수치 나열 지양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들이 기존의 통계를 단순히 수집·가공하여 나열하는 조각보식(patchwork)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표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지표는 기본적으로 기존통계나 각종 추정치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광범위하면서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집약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체계적인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개발되기보다는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되면 지표의 체계성은 물론이거니와 지표간의 상호 연계성 또한 부족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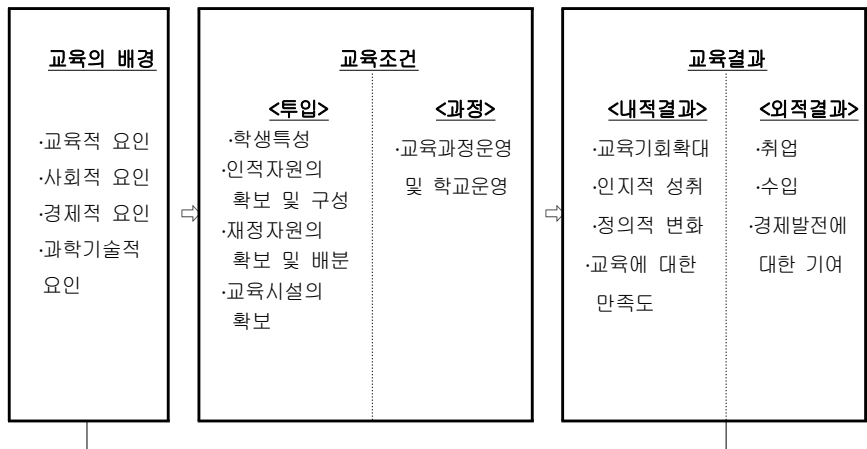
지표간의 연관이나 논리적 지표체계 모형 구축에 관련하여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서는 지표체제를 투입, 과정, 산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다시 하위영역을 선정한 후 각 하위영역별로 관련지표들을 산출해 내는 방식을 취한다. 교육지표개발의 체제분석적 모형을 사례로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교육지표는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 기초할 때, 교육체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상위체제인 사회체제로부터 피교육자를 포함한 인적·물적투입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투입은 교육체제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결과인 유형·무형의 산출을 낳게 된다’는 관점을 취하게 된다. 예컨대, Johnstone(1981)은 교육체제를 투입, 과정, 산출영역으로 나누고,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의 과거틀(past framework)과 교육의 산출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사회의 미래틀을 포함시켜 교육지표체제 개발을 위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과거의 사회틀은 교육체제의 배경으로서 경제체제, 사회체제, 정치체제가 포함된다. 둘째, 투입요소는 크게 교육자원과 교육의식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자원은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재정과 같은 물리적 자원을 의미하며, 교육의식(preference for education)은 사회가 교육에 어느 정도 투자하려고 하며, 제공되는 교육체제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교육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지표는 보건, 국방 등 다른 국가사업에 비해 교육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교육에 어느 정도 자원이 투입되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과정요소는 교육체제구조(system structure)와 투입요인의 분배로 구분된다. 교육체제구조는 체제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투입요인의 분배는 교육자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준다. 넷째, 산출요소는 자원 및 기술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된다. 자원 및 기술은 교육체제에 의해서 산출되는 기술의 양과 질을 의미한다. 다섯째, 미래사회의 틀은 교육체제의 산출결과가 경제, 사회, 정치체제의 요구에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나타내주는 변인으로서, 자원과 기술의 활용이 포함된다.

MacRae(1985)는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정책모형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인, 투입변인, 과정변인, 산출변인의 네 개의 변인군으로 분류하여 각 변인군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 외생변인(exogeneous variable)은 교육체제의 환경 또는 배경변인으로서, 가정환경, 학생능력, 지역 사회환경, 교육시장이 포함된다. 둘째, 투입변인은 학교가 작용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투입요소로서 재정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학교조직과 학급조직이 포함된다. 셋째, 과정변인은 교육환경속에서 투입요소가 피교육자에게 개개인의 학습을 통해 교육의 결과를 산출해내는 과정으로서, 다차원적인 개인의 학습이 포함된다. 넷째, 산출변인은 학교교육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로서, 취업 및 수입과 같은 개인의 성취, 생활양식, 문화적 소양, 시

민정신 등이 포함된다.

한국교육개발원(1988)은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분석모형을 교육의 배경, 교육조건, 교육결과의 세 범주로 나누어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의 배경은 교육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인으로서,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과학기술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교육자원의 확보, 배분과 교육정책의 형성 및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육의 질을 규제하고, 교육의 발전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교육조건은 교육체제의 목적이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체제에 투입되는 자원과 투입된 자원을 배분하고 운영, 관리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는 투입요소, 후자는 과정요소로 지칭된다. 셋째, 교육결과는 교육체제에 투입된 변인이 변환과정을 거쳐 나타난 피교육자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결과는 교육의 직접적 결과인 내적결과와 교육바깥의 사회체제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외적결과로 구분된다.



[그림 4-1]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모형.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1988). p.46.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은 청소년개발지표연구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Benson & Saito(2001)는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청소년개발의 이론적 개념들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개발의 이론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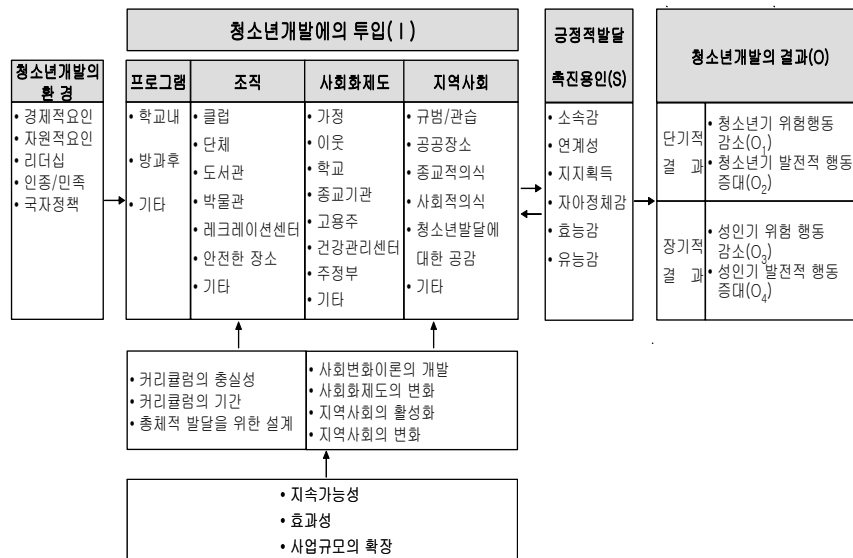
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배경부문과 투입부문, 긍정적발달 촉진요인, 결과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배경부문은 청소년개발의 투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경제적요인(economics), 자원요인(resources), 리더십(leadership), 청소년 정책(policy) 등이 포함된다.

둘째, 투입부문은 청소년개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장(setting)으로서, 크게 프로그램, 조직, 사회화제도, 지역사회 등으로 유형화된다. 프로그램(program)은 청소년에게 발달적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계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된 활동과정으로서, 학교내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조직(organization)은 청소년에게 발달적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들로서, 클럽이나 단체, 도서관, 박물관, 레크레이션센터 등을 말한다. 사회화 제도(socializing system)는 청소년개발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을 같이하는 사회체제들로서, 학교, 가정, 이웃, 종교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역사회(community)는 청소년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조직, 사회화제도들이 네트워킹되는 지리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규범과 관습, 청소년발달에 대한 공감과 지원, 공공장소 등을 모두 포괄하는 환경적 생태계를 말한다.

셋째, 긍정적발달 촉진요인은 청소년이 프로그램, 조직, 사회화제도,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얻게되는 중간결과물로서, 향후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자산(asset)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속감, 연대성, 지지획득, 정체감, 효능감, 유능감 등이 포함된다.

넷째, 결과부문은 청소년개발의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단기적·장기적 결과를 말한다. 단기적 결과는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고, 발전적 행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의미하며, 장기적 결과는 성인기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고, 발전적 행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림 4-2]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의 체제분석적 개념들

※ 출처: Benson & Saito(2001), p. 137.

(2) 지수화에 대한 고민 필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방대한 양의 지표들을 생산한 이후 고민해야할 내용은 발굴된 지표의 활용일 것이다.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세부지표들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에 대한 종합지수생산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수는 단일한 통계계열을 비교하는 개별지수와 다수의 통계계열을 비교하는 종합지수로 나눌 수 있다. 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론적 및 방법론적 고려들이 필요하다. 먼저 가중치의 문제이다. 종합지수는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별 지표들을 동등한 단위로 취급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지수(또는 Equal Weighting Strategy Index)와 각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지수로 구분된다(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6). 또 하나의 고려 지점은 지수화 단위이다. 애초에 연구자들이나 행정엘리트들이 지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비교’에 있기 때문에 비교의 수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지수 또는 지표 개발 이전에 선

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간 비교가 목적인가? 아니면 국내 특정 지역들 간 비교인가? 아니면 개인 간 비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등을 결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 이슈는 지수개발을 위한 세부지표의 양(Quantity)이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지표를 통한 종합지수개발은 지나치게 많지 않은 지표의 수를 전제로 한다. 물론 사회현상의 측정을 위한 내용타당도나 구성타당도 등을 고려하자면 현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관찰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 만약 지표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첫째, 개별 지표가 최종 지수 값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Sensitiv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종합지수의 구축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최종 지수의 정책적 활용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지수개발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각각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참여에 대한 외적 환경과 내적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최종 권리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시계열 국가통계 등의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권리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실제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주체적 권리를 느끼고 있는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주관적 지표들로만 아동·청소년권리지수의 지표들을 구성하였을 때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나 사회의 제도적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게 된다. 실례로 UN이나 WHO등의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각국 성인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 관련 조사들이 그 나라의 경제, 의료, 복지 수준과 전혀 동떨어지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주관적 지표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³⁾.

둘째, 주관적 지표의 산출을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과정은 측정 속성의 검

3) 2004년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은 나라는 푸에르토리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까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조사를 통해 측정속성을 검증하고 기 개발된 척도들을 수정 및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과 관련되어 이미 개발되고 다른 조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정 수준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외의 관련문헌 들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나 ‘한국청소년발달지표연구’등과 공인기관에 의해 생산된 조사도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그리고 각 영역 내에서 세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작업은 최종 지수를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세부지표들 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절차인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연구자들의 관심영역이나 이론적 정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개발된 **Child Well-Being Index**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헌검토를 통해 확인된 독립적 삶의 영역이 무려 150여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단일한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얼마나 다르게 그것의 내용과 구성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3. 소결

지표개발을 통한 지수화 작업은 일정한 사회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수치의 제시를 통해 현상에 대한 가시적·축약적 이해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증분석과 이론구성 모두를 포함하는 학술연구의 진흥은 물론이요 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은 앞 다투어 지표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정책지향적 연구가 학문적 철저함을 갖지 못한다면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의 생산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적 연구가 실제 현실에서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엘리트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원·임현목·이재분(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 강현아(2006).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구로건강복지센터 외(200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 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5).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 I.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주)한국리서치.
- 국가인권위원회(2006). 학생인권 관련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회(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 국무조정실(2002. 5).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서울: 관계부처합동.
- 국제아동복지연맹홍콩지부·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 교재』.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회.
-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유엔과 인권-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 길은배·이미리·임영식·이용교(200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2004).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2005a).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2005b).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승권(2008). 「국제적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한국아동권리학회 편,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서비스』. pp18-51.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신영·임지연(2007).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Ⅱ』 - 발달지표 결과부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김경준·이혜연(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

- 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경자·김희진(2008). 『국제기준대비 한국청소년 인권수준연구 I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이용교·김세진(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용교·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용교·임지연(2000).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인숙·오선영·송수진·정필현(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아동권리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호·김경화·한상철·임성택·박정배(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진호·김진화·송병국·오해섭·윤명희·이택선·임영식·정효진(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철·김신영(2005). 『청소년개발지표 연구Ⅱ-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대한민국 정부(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2003). 제2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 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 CRC/C/Q/REPKO /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 대한변호사협회(2004). 『인권보고서』 - 2003년도 제18집.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 도종수·고성혜·전명기(2002). 『청소년보호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류은숙(2003). 「한국의 인권운동의 성과와 과제」. 『세계헌법연구』 제7호.
- 문진경(2001).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배경내(1998).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배동인(1992). 『시민사회의 개념: 사상사적 접근』. 서울: 한울.
- 박소희(2008). 「프로그램 평가 지표체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향아(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2호. pp. 103-120.
- 서문희·안현애(2003). 「아동권리지표의 생산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83호. pp. 49-65.
-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조애자·박세경·안현애(2004).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평가 및 아동백서 발간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호주·인도·홍콩 편』. 사람생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2002). 세계아동현황보고서 2003.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윤수미(2005). 「학교연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인권의 식과 인권옹호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윤철경·김성경·김현주·박병식·이봉주(2005).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범(1997).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원리와 이행방안」.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pp. 23-34.
- 이기범(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2호. pp. 69-83.
- 이봉주 외(2006a). 2006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이봉주 외(2006b).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교(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용교·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박창남·이중섭(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Ⅱ-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용교·이명목·안경순·정경은·정민기(2006).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광주: 광주대학교 출판부.
- 이용교·천정웅·안경순(2006).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박경희(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용화(2005). 청 「소년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재연(1997). 「각 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실천 상황」.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pp. 5-20.
- 이재연(2004). 『아동권리모니터링의 방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 모니터링 자료집.
- 이재연·이용교·강현아·김덕순·김영지·노경주·손병덕·연홍숙·황혜원(2005).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아동권리학회.
- 이종원·장근영·김형주(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Ⅱ-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중섭·박해석(2006).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창수·윤영철·김영옥(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서울: 새사회연대·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역(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 임지연·김진영·김정주(2007).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Ⅱ - 발달지표 종합부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아미(2006). 청소년 우대정책과 청소년증 활용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인권, pp. 29-52.
- 최원기·전명기·이주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이해주·이미리(2004). 『청소년인권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88). 『교육지표의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아동권리학회(2002. 4). 아동권리 모니터링 -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상범(1991). 『인권: 민중의 자유와 권리』. 서울: 교육과학사.
- 황옥경(2002).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황옥경(2003a).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옴부즈맨 수립방안」. 『아동권리연구』, 제7

- 권 1호, pp1-24. 서울 : 한국아동권리학회.
- 황옥경·정준미(2006).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호리오 테루히사(1999). 인권사상의 발전과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Angel, William 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Benson. P. L., and Saito, R. N.(2001).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youth development. In P. L. Benson and K. J. Pittman(Eds.),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rown Margot ed(1996). Our World, Ou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 Council of Europe(1996). The rights of the child - a European perspectiv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ynthia, P. C. (1996). Monito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 Non-party state: The United States.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475-490.
- Fache, W. (1996). How to Develop a anticipatory, Comprehensive and Coherent Youth Policy?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263-279.
- Franklin, Bob and Hammarberg, Thomas(Eds.)(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Freeman, Michael(Ed.)(1996). *Children's Rights :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led USA, Singapore, Sydney: Dartmouth.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Hodgkin, Rachel-Newell, Peter(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ully revised edition. New York: UNICEF.
- Johnston, J. N.(1981). *Indicators of educational systems*. London: Kogan Page.
- MacRae, D. J.(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North Carolina:N.C. University Press.
- O'donnell(1996). Children's Ombudsmen and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Radda Barenen: Stockholm.

- Rayner, Moira(1995). Childrens' rights in Australia. In Bob Franklin(Eds.),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pp. 188-199). New York: Routledge.
-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any.
- The World Bank(2006).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 Development And the Next Genera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The World Bank-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Tisdall, E. K. (1997). The Children (Scotland) Act 1995, Edinburgh : HMSO.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report. www.unhcr.ch/html/menu2/6/crc/doc/session32.htm.
-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United Nations.
- UNICEF(1998). A Human Rights Approach to UNICEF Programming for Children and Women. New York: UNICEF.
- UNICEF(2007).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2~2008 각년도. New York: UNICEF.
- United Nations(1995).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A/RES/50/81).
- United Nations(200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2004a). Making Commitments Matter: a Toolkit for young people to evaluate national youth policy.
- United Nations(2004b). World youth report 2003 - The global situation of young people. New York, NY: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United Nations(2005). World youth report 2005 - Young people today, and in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ited Nations(2007). World Youth Report 2007 - Young people's transition to adulthood : progress and challenge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Van Bueren, G.(1998).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Walker, Nancy E.,Brooks, Catherine M. and Wrightsman, Lawrence S.(1999). *Childr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 In search of a national policy*. California-London-New Delhi: SAGE Publications, Inc.

Winter, Micha de(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New York: Radcliffe Medical Press.

토 론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로
본 정책제언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로
본 정책제언
3.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위한
제언
4. NYPI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의 발전과제
5. 청소년인권정책 현황과 과제모색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로 본 정책제언

이 중 섭(광주대학교 객원교수)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주요 정량지표 분석결과 요약

발달론적 관점에서 발달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의 인지·신체·심리·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최경숙, 2000; Newcombe, 1996; Shaffer, 2002; 이봉주 외, 2010 재인용). 따라서 인간발달의 구체적 영역은 인지발달, 언어능력 발달,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의사소통능력 발달, 도덕성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등으로 세분화된다. 본 연구도 이 같은 선행연구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발달의 영역을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그리고 신체적 발달로 범주화하여 관련 정량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향유 정도나 의무이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발권영역의 범주를 각 영역별로 기회와 결과로 세분화하였다. 가령, 인지적 발달은 인지발달기회와 인지능력으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고, 정서적 발달은 정서발달 환경과 정서적 안정 등으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이외 사회적 발달과 직업적 발달 그리고 신체적 발달도 기회와 결과의 내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위범주를 구성하였고, 분석결과를 발달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적 발달의 경우 주요 지표인 취학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퇴율은 낮았다.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취학률은 2009년 현재 89%로 OECD평균 82%보다도 7%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 취학률 역시 한국은 2009년 현재 28%로 OECD 평균 취학률인 25%보다도 3%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중퇴율도 1990년에는 1.6%에서 1998년 2.1%로 상승하였지만 2005년에는 0.06%, 2008년에는 0.09%

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만 학교생활 즐거움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의견에서는 청소년의 약 25%정도가 즐겁지 않다고 응답해 학교생활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다. 아울러 대학진학률도 2004년 이후 80%를 초과해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을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점 그리고 사교육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점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서적 발달에서는 다른 지표들 중에서도 우울증지수와 자살률 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진료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우울증 진료건수는 2004년 4만8782건에서 2008년 10만6830건으로 5년 새 119%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 등이 서울시내 39개교 중·고교생 1만3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울증 선별 검사에서는 2180명(16.7%)이 1차 선별검사에서 초기 우울증세를 드러냈고, 우울증 척도가 심각해 병원치료를 권고 받은 청소년도 456명(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10-19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2위는 자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률도 2008년 현재 전체 아동청소년의 1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발달의 중요한 지표인 스트레스 인지율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43.7%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일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원이 주로 학업이나 성적에 따른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성적의 중압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와 자녀의 그리고 자녀와 교사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정서적 불안에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발달 부분에서는 청소년단체활동에 회원으로 가입한 비율이 초등학교생이 26.7%, 중학생 15.0%, 인문계 고등학생 11.1%, 전문계 고등학생이 7.4%로 나타나서 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단체 가입비율이 높았고, 5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7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의 약 37.5%가 한 두개 정도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체로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나 동아리 활동 참여는 다소 높았지만 지속적인 참여에는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회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동아리 활동의 지원, 그리고 학교수업과 사회참여 프로그램간의 연계 등의 정책이 요구되었다.

한편, 진로발달부분에서는 청소년의 78.3%가 진로관련 검사를 위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사회나 도덕 등의 과목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도 61.6%였다. 특히, 진로발달을 위한 정부의 정책 중 직업박람회 참여나 기업인 강연, 그리고 기업체 방문 등의 진로교육은 OECD 28개국 중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진로교육 만족도도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해 현재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발달에서는 초등학교생의 17.1%, 중고등학교생의 9.3%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고, 중고등학교생의 31.6%가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중고등학교생의 절반이 넘는 50.6%가 ‘보통이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다’ 28.5%, ‘매우 관심이 많다’ 10.2%, ‘관심이 없는 편이다’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능력은 지속적으로 감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가령, 2008년 신체검사 결과를 2000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 및 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

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모든 종목에서 2008년 기록이 저조해 아동청소년들의 기본 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와 여자의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기록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입시 준비에 따른 학업 증가로 신체활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청소년발달권 관련 정량지표의 체계적인 개발이나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후속연구에서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 발달의 영역별 범주화가 필요하다. 발달권은 결국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이라고 하는 결과에 비추어 아동과 청소년이 어느 정도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단계를 영역별로 범주화하고 관련 영역별로 권리의 보장 정도 혹은 의무의 이행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영역별 범주화는 발달이 단순한 신체적 발육만을 의미하지 않는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포함한 전인적 성장을 의미한다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로 그 영역을 세분화해야 한다.

둘 째, 향후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청소년의 단점과 문제행동보다는 긍정성과 장점을 구체화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최근 청소년관련지표들은 여러 맥락을 중시시키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표들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사회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행동을 강조할 경우 청소년 정책은 고위험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오점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

물론 청소년지표의 구성에 있어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청소년의 현실적인 실태에 대한 분석이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Kirby(2001)의 적절한 지적처럼, 문제중심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동기 부여와 능력을 제공하거나 문제행동의 복잡한 개인적 사회적 전제를 제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십대의임신과 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상의 문제행동과 단점을 지양하고 긍정성과 장점이 구체화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향후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전체 청소년의 발달권에 대한 실태와 상황에 더하여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청소년, 이주청소년, 미혼모, 혼혈청소년, 편모가정의 청소년 등의 발달상의 장벽과 장애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발달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청소년에 대한 지표의 개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이들 소수청소년들에 대한 지표는 다른 지표의 개발에 비해 더딘 것이 현실이고 이들 청소년의 실태를 평가해줄 전문적인 지표안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장애인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지표가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 장애인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적·연령적 관점이 동시에 투영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발달권지표에서는 일반청소년을 중심으로 소수청소년을 주변화하지 않고 소수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권리상의 문제와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세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신체적 안정, 양육환경의 적절성, 지적능력과 다른 능력들의 완전한 개발,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정책과제를 세분화하고, 해당 시기의 정책과제 이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환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발달이 성장과정에서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된다면 발달권은 이 같은 성장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적 과제가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고, 권리의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은 이 같은 권리를 어느정도 향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 시기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 그리고 현재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부터 그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김윤정(1998)은 아동전문가를 대상으로 발달단계별 권리의 유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연령과 발달상의 특징에 따라 각각의 단계에서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이한 권리를 유형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먼저 영유아기는 발달특성상 신체적, 정서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고 부모와 양육자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자라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습관과 활동 등을 습득하게 되고 신체 및 지적인 성숙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놀이와 표현활동이 발달되어 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달상의 특성에 따라 영유아기에는 건강과 의료, 위생적인 양육환경에 대한 권리, 놀이를 위한 장난감, 시설 등을 제공받고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 생활습관을 교육받을 권리, 부모에 의한 양육과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강조된다.

다음으로 아동기는 신체적 발달이 비교적 완만히 진행되며 발달의 속도가 점차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는 시기로 이 시기는 운동기능이 발달하고 놀이에 열중하며 지식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또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며 부모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기는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한 생활조건을 제공받을 권리,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할 권리, 휴식·놀이·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통안전에 대한 권리가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성장의 시기이며, 신체적으로 성인과 거의 동일해지고 성적으로 성숙하며,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독립성이 강해지며 미래 성인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 같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이 시기에는 능력과 자질의 개발할 권리,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교육에 대한 여러 사항을 선택하고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강조된다.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권리는 건강, 의료, 생존, 발달, 생활의 보장에 대한 권리, 휴식, 여가, 놀이, 문화적 생활에 대한 권리,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받을 권리, 아동의 의사존중과 표현의 권리, 비차별의 권리, 국적권, 위험한 물건, 물질, 시설 각종 폭력, 노동,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상황에 맞는 도움을 요청할 권리,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고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 등이다(김윤정, 1998).

이 같은 인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여가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향유가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교육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정내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존중 등을 포괄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시작은 가정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 이를테면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아동 부양가족 혹은 빈곤 가족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물질적 지원 중심의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을 비롯하여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위주의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울증이나 자살, 사회적 고립감, 정서적 불안 등 발달권의 중요한 지표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고, 이 같은 요인은 주로 개성과 인성을 경시하는 현재의 입시중심의 교육에 기반한다. 아동청소년이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균등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체제는 상당한 개선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보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의 권리가 성인의 권리에 종속되지 않는 개별적 권리이자 주체적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단계에서 요구되는 정책을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성인의 종속물로 이해하는 잘못된 문화적 태도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아동청소년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는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환경이다. 이 같은 환경의 개선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을 기초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강제될 때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법과 제도로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 발달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로 청소년 발달권 지표를 청소년 발달 영역에 따라 구체화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발달권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발달권의 권리 유형도 체계적인 학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념이 아니다. 때문에 발달권의 측정을 위한 일부 지표들이 생존권이나 보호권 등의 여타 권리의 지표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권리 혹은 인권실태에 대한 분석은 해당 권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이 같은 정의에 기초한 권리내용의 명료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발달권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이전에 발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함께 발달권의 구체적 영역을 여러 과학적 논거를 토대로 범주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청소년의 단점과 문제행동보다는 긍정성과 장점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최근 청소년관련지표들은 여러 맥락을 중시시키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표들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사회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행동을 강조할 경우

청소년 정책은 고위험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오점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

물론 청소년지표의 구성에 있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청소년의 현실적인 실태에 대한 분석이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irby(2001)의 적절한 지적처럼, 문제중심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능력을 제공하거나 문제행동의 복잡한 개인적 사회적 전제를 제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10대의 임신과 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상의 문제행동과 단점을 지양하고 긍정성과 장점이 구체화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전체 청소년의 발달권에 대한 실태와 상황에 더하여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청소년, 이주청소년, 미혼모, 혼혈청소년, 편모가정의 청소년 등의 발달상의 장벽과 장애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발달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청소년에 대한 지표의 개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이들 소수청소년들에 대한 지표는 다른 지표의 개발에 비해 더딘 것이 현실이고 이들 청소년의 실태를 평가해줄 전문적인 지표안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장애인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지표가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 장애인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적·연령적 관점이 동시에 투영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발달권지표에서는 일반청소년을 중심으로 소수청소년을 주변화하지 않고 소수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권리상의 문제와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세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달권지표의 구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주관적 지표의 구성은 엄격한 조사와 평가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개인이 느끼거나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지표가 상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로 본 정책제언

김 윤 나(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1. 아동·청소년 참여권 주요 정량지표 분석결과 요약

아동·청소년 참여권영역에서의 주요 정량지표 영역은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관련 인식 등으로 총 6개의 관심영역, 17개의 세부관심영역, 48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 의해 개발된 참여권 분야의 주요 정량지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실태를 살펴 본 지표의 기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관련해서는 종교결정권과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의 정량적 지표를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는 48.3%의 청소년들이 종교를 스스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56.7%가 종교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의 수 및 재학생의 비율은 1,910개 고등학교 중 종교사학은 개신교 7.2%, 천주교 2.0%, 불교 0.8%, 기타 6.5%로 총 16.5%(315개교)나 됨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중립학교 현황 2009년 4월 1일 기준). 이 자료로 판단한다면, 청소년의 종교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 충돌이 일부 소수에 게만 발생하는 것이라 치부해버리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2005년 10월경 강의석 군이 대광학원과 서울시 교육감 상대로 종교활동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종교재단 설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권 보장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종희(2001)의 연구자료에서는 총 26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는데 이중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판례의 수는 단지 4건이었다. 실제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가 가사소송규칙과는 관계없이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과 그에 따른 의사표명능력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정량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급증하는 이혼률에 비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문화 및 여가활동의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를 알아보았다. 최복경(2008)의 연구에서는 88.3%의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스스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가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도 115명(95.8%)이나 되었다. 그러나 서울청소년활동진흥센터(2009)에서 연구한 2008-2009 요구조사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개발의 전략적 접근에 의하면, 학부모의 청소년들에 대한 여가활동에 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들은 학교성적 하락에 대한 우려와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관점, 정해진 시간내 할 수 있는 활동관리에 대한 시간관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있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사적취향의 자유영역에서 부모의 청소년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2005년 전국 중·고 청소년 2,91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은 나의 두발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가정에서의 두발 자유권이 없다’는 문항에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11%(‘그렇다’ 7.8%, ‘매우 그렇다’ 3.6%), 25%는 두발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 16.0%, ‘매우 그렇다’ 9.2%).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영역에서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을 알아보았으나 이와 관련된 정량적 자료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우리나라 학교 대부분의 교칙에는 ‘학교장 허락 외에 일체의 대외 활동을 금한다’라든가, ‘학교장 허락이 없는 교내 비공식 동아리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등의 규정이 있어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내·외 일체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학칙의 기준도 애매모호하여 대부분 학교의 분위기나 전통, 학교장의 성격에 따라 적용범위도 크게 다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1990년대 중반, 최OO군의 강제 야자 관련 위헌소동을 계기로 모인 중고등학생복지회의 회원들이 학교로부터 탈퇴를 종용받으며 체벌을 받은 사례나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준)의 전 부산 지역장이 학교 측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넷째,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는 최근의 시대변화를 감안하여 ‘도서에 대한 접근’과 ‘인터넷 접근’의 두 차원에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도서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연간 발행되는 신간 발행 종수 중 아동 대상 도서의 비율)과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청소년 1인당 월평균 도서대출 현황)을 알아보았다. 도서 발행비율은 2009년 43,099권의 총 신간 발행 종수 중 아동 신간 발행 종수는 7,884권으로 18.69%이며, 신간 발행 부수는 총 106,214,701권 중 29,275,142권으로 2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대출 현황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다매체 환경에서 독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한·일 청소년의 독서량을 비교해 보면, 일반도서는 양국이 흡사했으나 잡지 열독량은 일본이 한국의 10배 이상으로 충격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 역시 2년 만에 16.9% 포인트나 늘어난 70.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소년 한 학기 독서율(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은 평균 86.3%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10년 전보다 15%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해가 바뀔수록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 학기

독서량은 초등학생이 19.4권인 데 비해 중학생 9.5권, 고등학생 6.3권으로 2002년 조사결과에 비해 중학생은 약간 증가하고 고등학생은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 독서량 감소 경향이 여전했다. 평일 기준 독서시간은 47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독서시간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청소년 맞춤 독서정보가 빈약하고 베스트셀러 편식 독서가 만연되어 있다. 청소년이 즐겨 읽는 도서 분야로는 일반소설(24.4%)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만화/무협지/판타지소설(28.3%), 추리소설, 연예/오락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중고생의 독서경향은 교양도서보다 오락물 위주로 편중되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 지표로는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청소년 가구 중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청소년 가구 중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청소년의 일주일 동안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 항목을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12-19세가 95.7%로 전체 평균 91.4% 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약 95%이상인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20대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의 가구 연령대를 감안한 것이다.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평균 10.4시간으로, 1시간 미만이 1.8%, 1-3시간이 9.3%, 3-7시간이 16.2%, 7-14시간이 37.1%, 14-21시간이 22.9%, 21-35시간이 10.1%, 35시간 이상이 2.7%였다.

다섯째, 사회참여 및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재 정도와 청(소)년 실업률,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청소년의 선거참가율을 알아보았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시 필요한 부모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에게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에는 92.5%, 2차년도에는 84.3%, 3차년도에는 65.7%, 4차년도에는 65.8%, 5차년도에는 65.1%로 제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동의서 제출 비율이 늘고는 있으나, 여전히 65%에 이르는 청소년들은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실업률은 2008년 14만 5천명, 실업률은 9.3%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10.2%로 20-24세(9.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5-19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1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문화적 활동 참여 현황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2009년에 실시한 청소년활동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단체수련활동, 청소년 축제 및 행사활동의 참여율이 50%를 넘고 있어 참여율이 가장 높고, 견학활동(47.6%), 스포츠 활동(41.5%)도 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를 보여주는 활동들이다. 30%대의 참여율을 보여주는 활동으로는 공연관람활동(39.4%), 자원봉사활동(35.2%), 동아리 활동(33.3%), 청소년 시설이용활동(30.5%)이다. 청소년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활동(24.6%), 야외자연체험활동(21.0%), 단체활동(20.3%)의 참가율은 20%대로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 자치활동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13.1%), 국제교류활동 참여율은 4.1%로 가장 낮다.

청소년 선거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총람에 의하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19세의 투표율은 33.2%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20대 후반(24.2%)보다 9.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참여관련 인식에서는 세부 개별지표로 참여의 효과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청소년 참여는 사회를 보는 시각 확대, 공동체 의식 확대, 능력과 자질 향상,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자부심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창욱·조혜영, 2007). 김정주 외(1999)의 연구에서는 참여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 지역사회 기여, 자아정체감 형성, 대인관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성(2004)의 연구에서는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 사회 임파워먼트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참여정도가 강할수록 정치, 사회적으로 더욱 임

파워먼트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김경호·문지영(2005)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조직에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되고 김원태(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참여의무감과 같은 시민의식 형성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허인숙·이정현(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활동 후에 느끼는 만족감이 시민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기범(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참여가 민주시민 의식 향상 뿐 아니라, 학습과정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조혜영·최창욱(2008)의 심층면접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참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른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자신과 관심분야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적극성을 기르게 되며 자신이 주도하여 타인의 의견이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게 된다. 또한 참여활동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주도성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정의적, 사회적 영역 뿐 아니라 지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사표현 능력을 기르며 나름대로의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제언

청소년 참여권 지표는 2006년도의 연구에서 5개의 관심영역, 12개의 세부 관심영역의 31개 개별지표가 개발되었으며, 이후 2009년 권리지수 개발연구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23개를 선택하여 해당 지표의 현황 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지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의 내용도 참고하여 6개의 관심영역, 17개의 세부관심영역, 48개의 개별지표가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흐름에서 청소년 참여권의 대표적 지표항목으로 제시된 항목 가운데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를 제외한 정량적 지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 내용들은 관련 통계와 현황이 파악가능하고, 정책과 대안모색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각 지표의 의미, 통계와 현황, 그리고 관련 정책과 대안모색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참여권 지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의 개발과 관련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참여권 이론적 Framework에 기반한 총체적인 지표항목의 개발 및 조정이다. 아동·청소년 참여권은 다른 권리영역,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보다 오히려 참여권의 보장이 더 어려운 현실에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분위기, 보수적인 유교문화, 청소년 참여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사회전반의 인식부족 등이 그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연구도 미비하였고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 실태도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수행된 지표개발도 아동권리협약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진행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맞는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들이 고려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참여권의 Framework과 국제대비 수준의 참여권을 비교·고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이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고려한 지표항목의 개발이다. 2006년의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의 외적 환경과 내적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최종 권리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간시계열 국가통계 등의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권리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실제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주체적 권리를 느끼고 있는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관적 지표들로만 아동·청소년권리지수의 지표들을 구성 하였을 때에는 아

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나 사회의 제도적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권 관련해서 현재 수준은 주관적·객관적 지표 모두 그 현황조차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지표 연구시 마다 조사를 하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표를 구성할 때, 객관적 지표로 파악할 수 없는 사안이라 주관적 지표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참여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지표와 아동·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는가의 관점에서 지표산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 참여권 실태 관련한 각종 선행연구결과에서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의 청소년 참여권은 연구조차 많이 수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형태로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 제공, 정보 제공, 채널 제공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참여권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체의 참여능력에 대한 지표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청소년 참여 보장 구축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성격이 강화된 지표이다. 따라서 참여권 관련 지표결과들이 지표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미비한 데이터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세부 개별 지표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과 비교, 고찰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촉발시키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의 데이터 구축 종단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수구축을 위한 세부지표들은 자료의 출처뿐만

아니라 자료수집 주기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로는 참여권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 산출해내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짧은 자료구축 기간과 지표별 구축년도의 상이함은 많은 수치를 추정해야 하는 등 표준화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따라서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의 데이터 구축의 포괄적·종합적 그림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세부지표들이 일관된 구축년도를 통해 자료가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위한 제언

천 정 응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I

아동과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의사결정과정의 공유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다(천정응, 2008). 효과적인 참여는 단지 작은 한 집단만이 아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문협의의 단계를 넘어서 책임을 지고, 결과를 성취하며, 성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한다(Cairns, 2001).

이 글은 오늘의 발표 중에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한 논지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급하기로 한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찰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함으로써,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과 참여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연구적 과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먼저, 참여권을 발언권이 아닌 결정권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 또는 학생 참여권 촉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여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견해나 발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대부분은 보통 성인들의 의제(agenda)에 대응하여 자문협의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경향이다.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발언권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참여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주요 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참여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Kranzl-Nagl & Zartler, 2010).

호주의 Quality in Schools 사례는 학교발전계획에 학생들의 참여하는 것이

다. 이 프로젝트는 각급 학교들이 자체적인 발전을 위한 기준들을 검토하고 모니터하며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교육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초등학교에서는 6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내가 꿈꾸는 학교”라는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희망하는 대로 새롭게 아동친화적 운동장과 학교환경을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 브리에(Brie) 시 청소년위원회의 경우는 10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 청소년 약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들은 학교에서 선거에 의해 매년 선출된다. 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수준의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며, 정치체도로 접근하는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동시에 책임감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들이 소요 예산(연간 약 4000프랑)을 직접 운용관리하며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영국의 Playing for Real 프로그램 사례는 지역사회에서나 학교에서의 놀이터나 운동장에 대해 아동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환경적 상황 검토와 모델 개발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들의 놀이공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설치물들이 조경 등을 준비한다. 주로 5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며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디자인함으로써 시민교육을 향한 한 단계를 더 밟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이 학교와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언권의 수준을 넘어 결정권으로까지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몇 가지 위원회 프로그램만으로 참여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참여권 논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참여이론과 실제에 의하면 참여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 과정 전반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하나의 숙고하는 과정이며 학습·행동

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한다(Taylor & Perry-Smith, 2008).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이슈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후속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여전히 대부분 성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 점은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그 전체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발언권을 갖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청소년참여를 성취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은 분명하다(Clark & Percy-Smith, 2006).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행동 또는 행동주의 (activism)와 관련되며, 그에 대한 준비 없이 성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참여권과 관련한 논의의 중요성은 최근의 우리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시위참여의 사례 등과 같이 보다 다양화된 형태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행동, 사회운동 그리고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자주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을 갖고 있다.

형식화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 참여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ercy-Smith (2006)가 주장하고 있듯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이슈들과 결정은 집이나 학교 및 근린지역같은 일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 영역 밖에서 일어난다.”(p. 154). Hart (2008)는 아동들이 자기 지역 공동체에서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 비형식적 참여에 종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당면 이슈에 관한 자기류의 개념에 따라 형식적 의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육을 통해 훌륭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나 우리 사회가 그러한 “준비”에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한 집합적 의사표현에 대한 훈련이 없이 성인이 되는 것 보다, 그러한 연습을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성”이 더욱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최근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인 인도에서의 아동리포터(Child Reporters)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로 볼 수 있다. 아동리포터제도는 인도의 한 외딴 소수 부족 지역인 Koraput 구역에서 100명의 아동으로 출발한 이니셔티브이지만 Orissa 주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약 5000명 정도의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가 살고 있는 마을의 발전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자신들의 집과 마을, 주민들에 대해 알리고, 자신들의 꿈과 세계에 대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린다. 아동리포터 제도의 개념은 2004년 인도의 UNICEF 관계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진전되었으며 이러한 발상의 기본틀의 일차적 관심은 아동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Acharya, 2010).

Columbia에서는 월드비전이라는 한 사회단체에 의해 지난 10여년 이상 Gestores de Paz(Agents of Peace)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아동이 주도하는 평화화 문화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드비전에서의 Columbia에서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지각을 갖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지역사회에서의 평화를 건설하는 데에서의 행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이 처한 실제 조건들을 알고 변화시키도록 스스로를 권한부여(empowering)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Gestores de Paz운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 현재 이 운동은 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소년, 소녀 및 청소년 10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국적인 차원의 다양한 민족집단, 종교 및 지역성을 대표하고 있다(Austin, 2010).

셋째, 아동과 청소년참여권을 보장하는 노력은 가정, 지역사회, 사회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학교는 인권의 장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참여권에 있어서도 열린공간으로 일신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장 교육적인 공적 영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참여가 적게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대안”학교들의 경우 보다 민주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참여권 진작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청소년단체나 활동시설 등에서의 대표기구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학교가 대표적인 참여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대부분의 학교관계성은 수직적이며 다소 권위적이고,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발언권은 통제되거나 제약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 참여권을 논의하면서 “학교의 분위기”가 자주 지적되는 것도 이 점에서 관련된다. 학교의 담장이 인권의 장벽으로 받아들여지고, 학교 내 학생인권이나 교칙문제가 학교만의 문제이며 재량적 권한이라는 인식은 학교인권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배경내, 2006).

현재 학생들의 의견반영이라는 형태의 형식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아동과 청소년 참여형태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참여에는 자문협의적 참여(consultative participation), 공동협력적 참여(collaborative participation), 그리고 아동 주도적 참여(child-led participation)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현재의 학생참여 수준은 그중 자문협의적 참여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아동과 청소년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참으로 중요하다. 일차적 개발에 만족하지 말고 개발된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사결정에의 참여라는 아동 청소년 참여권의 실질적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참여에 대한 정도(extent), 질(quality), 효과성(impact) 등의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Landsdown, 2004).

참여의 정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참여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다.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의사결정 지점(point)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자문협의, 공동협력, 아동주도 등의 3가지 수준은 아동을 각기 다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아동이 상황 분석, 계획, 프로그

램 디자인, 실행 또는 모니터링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평가자체는 그들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의 정도에 중요한 효과(impact)를 갖게 된다. 따라서 아동 참여의 정도(extent)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수준과 진입시점(point of entry)에 관련된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의 질(quality)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적절한 실천을 대표하는 것과 관련된 원칙(principles)과 표준(standards)에 관한 일련의 지표들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는 반드시 투명해야하며 적절한 정보, 자발성, 존중성, 적절성, 아동 친화성 및 아동 가용성, 포함성, 안정성, 위험에의 민감성 그리고 책무성 등이 따라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참여의 효과성(impact)에 대해서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개별적 이니셔티브나 활동에서나 효과성의 지표는 적절한 성인 관계자와 함께 아동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들에는 아동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표(예컨대, 자신감, 기술 함양 또는 자기 존중감 등),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표, 지역사회 내의 아동에 대한 태도나 종사자와 부모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표 그리고 아동권리의 보다 넓은 실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III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참으로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참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참여권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동시에 인류가 지양해야 할 하나의 가치이기도 하다(Cheon & Lee, 2010). 참여권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참여권을 발언권이 아닌 결정권의 수준에서 보는 일, 앞으로 전개될 시대에 대비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준비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준비하는 일,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학교가 열린공간이 되는 일, 그리고 참여권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

등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참으로 많다. 의미있는 아동참여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범위에서의 입법화, 정책 및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조치, 아동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성인의 자각,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체계적 메카니즘 확립 등이 중요하다(UNCRC General Comment No. 12, Article 12; 김영지, 2010).

끝으로, 최근 Percy-Smith와 Thomas(2010)가 최근의 세계적인 청소년참여의 동향을 7가지의 특징으로 표현하면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로 6가지가 필요하다고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그들이 정리한 아동과 청소년참여의 실천적 동향에서의 특징은 1) 변수로서의 참여, 2) 참여와 보호, 3) "목소리"와 활력, 4) 제도와 공동체들, 5) 자기결정성과 자율성, 6) 가치, 과정, 학습 및 성과 그리고 7) 성인의 역할 등이며 이러한 테마들은 참여와 참여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즉, 1) 일상생활에서부터 참여를 진작하도록 지지하라 2) 의사결정에서는 "단지 한마디 말하는 것" 이상의 참여를 증진하라 3) 적극적 시민으로써의 참여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구축하라 4) 성인의 차별과 아동기에 대한 부정적 이해에 도전하라 5) 성인의 역할과 성인과 아동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어라 그리고 6) 아동을 위한 시민적 권리와 시민적 관여(engagement)에 대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이해하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동향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과 이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여증진을 위한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연구하는 일은 현재의 아동참여권에 대한 이해를 진일보하는 또 다른 출발이 될 것이다. 오늘의 발표내용과 세계적인 참여권 연구의 결과들을 함께 고찰하는 일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지(2010). "참여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참여" 한국아동 권리학회·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의 참여, pp-1-35.
- 배경내(2006).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증진 인권교육 토론회, pp. 3-22.
- 천정웅(2008).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청소년 참여권, pp. 11-48.
- Acharya, L. (2010). "Child reporters as agents of change," In B. Percy-Smith & N. Thomas. *A handbook of children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Perspectives from theory and practice* (pp. 204-214). London: Routledge.
- Austin, S. .L. (2010). "Children's participation in citizenship and governance. In B. Percy-Smith & N. Thomas. *A handbook of children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Perspectives from theory and practice* (pp. 245-253). London: Routledge.
- Cairns, L. (2001). Investing in children: Learning how to promote the rights of all children. *Children and Society*, 15, 347-360.
- Cheon, J & Lee, Y. (2010). *Youth development and youth civic engagement*. Human & Welfare Books.
- Clark, A. & Percy-Smith, B. (2006). Beyond consultation: Participatory practices in everyday spaces. Editorial introduction to global special issue: Pusing the boundaries: Critical perspectives on child and youth participation.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16(2), 1-9.
- Hart, R. A. (2008). Stepping back from "the ladder": Reflections on a model of participatory work with children. In A. Reid, B. B. Jenson, J. Nikel, & v. Simovska (Eds.), *Participation and learning* (19-31), Springer.
- Kranzl-Nagl, R. & Zartler, U. (2010). "Children's participation in school and community," In B. Percy-Smith & N. Thomas. *A handbook of children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Perspectives from theory and practice* (pp. 165-173). London: Routledge.
- Landsdown, G. (2004).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programming," In Bernard van Leer Foundation (ed.), *Early Childhood Matters*, The Hague: Bernard van Leer Foundation.

- Percy-Smith, B. (2006). From consultation to social learning in community participation with young people: Creating "Space" for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development using dialogue and social learning.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16(2), 153-179.
- Percy-Smith, B. & Thomas, N. (2010). *A handbook of children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Perspectives from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 Taylor, M. & Percy-Smith, B. (2008). Children's participation: Learning from and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6, 379-394.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9.7.20). General Comment No. 12-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CRC/C/GC/12).

4. NYPI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발전과제

이 민 희(평택대학교 교수)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이다. UN에서 1989년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선언되고 1991년 회원국으로 가입된 후 15년 만의 일이다.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34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UN아동권리위원회에 회원국의 의무로 3차례 아동인권의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 인권에 관한 실태가 여러 차례 조사되었으나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010년까지 5년간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행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온 이 연구는 향후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연구에 있어서 주춧돌과 같은 위상과 역할을 가지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연구수행의 의의를 가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제기준 대비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는 연구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제한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과 제한점의 원인은 무엇보다 이 연구가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데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인을 찾자면 역시 인권문제에 있어 성숙도는 민주주의 성숙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것도 원인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탄생이 넓게는 인권으로부터 좁게는 당시의 시민권에서부터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서구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론과 실천의 오랜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서구와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미성숙 단계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 개개인은 인권문제 대하여 아직 성숙한 개념의 정립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 형성과 가치 판단 및 의사소통 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어릴 적부터 가르쳐지고 일상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한국의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은 이러한 교육적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어 인권에 대한 발전적 사고와 가치관 형성이 더더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기준 대비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상황적 배경을 들여다 볼 때에 이 연구의 가치와 의의는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극복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 아래에서 지금까지 고찰된 지난 3년간의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 대한 성찰로서 2009년 생존권과 보호권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던 그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함께 드러내어 논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찾아본 후,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에 관하여 고찰해 보자.

1.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일반적 문제점들에 관한 제언

2009년의 연구에서도 이미 제언되고 시사된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을 연구하는 데 내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과 제한점들은 무엇보다 지표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해 이를 위해 제언된 내용은 크게 아동권리지표와 청소년권리지표 개발의 차별성, 변증법적인 인권지표의 개발 연구, 실천 지향적인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의 개발이다(모상현 외, 2009: 75~78). 이러한 제언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방법과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중요한 제언들로서 개발에 앞서 개발자들이 유념해야 할 거시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가지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영역의 범주로 고착되어 있는 영역성과 경계성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각 인권 영역에서의 개별지표 선정에서 개발자들이 가지게 되는 해석학적 순환의 어려움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론과 실천의 괴리로

아직 실태로서 인식되기에 미숙한 인권현장의 성숙도를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자.

먼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영역의 범주로 고착되어 있는 영역성과 경계성의 문제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각 개념이 가지는 범주와 경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모든 인권내용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4개의 단어로 압축되어 범주화되고 서로 경계가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UN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마치 4개의 인권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거의 일반화 되다시피 하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근거는 그 어느 곳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모상현 외, 2009: 45~46).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로는 협약 자체에 이러한 4영역의 분류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이 UN아동권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에도 이러한 분류로 범주화되어 목차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아동·청소년 인권 범주를 근본적으로 문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아동·청소년 권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현존하는 범주화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학문적으로도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권리의 4대 영역화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통한 재검토와 비판적 논의를 거쳐서 다시 원안이 그대로 수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가 이번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존권과 보호권의 경계, 생존권과 발달권의 경계, 발달권과 보호권의 경계, 발달권과 참여권과의 경계 등에 있어서의 혼란이 하위 영역의 개별지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영역화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4대 영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영역화 하는 방법과 기존의 영역화

에서 경계의 중복에 관한 문제를 인정하고 협약의 각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내용들이 영역의 분류에서 중복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새로운 아동·청소년 권리영역의 범주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인권지표의 개발자가 이미 범주화되어 있는 각 인권영역에서 개별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해석학적 순환의 어려움이다.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scher Zirkel)’은 문헌연구에 있어서의 해석학적 방법이 가지는 난제를 말하는데 이를 간략히 말하면 전체의 이해는 부분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동시에 부분의 이해는 전체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해석하는 주체와 해석의 대상인 객체, 텍스트(text)의 관계에서 볼 때에 이 둘은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텍스트의 이해는 해석자의 ‘전(前) 이해’를 전제로 하고, 동시에 텍스트는 해석자가 가지는 해석의 주관적 ‘전 이해’를 수정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이를 아동·청소년의 인권 연구에 대입을 하면 인권연구가 가지는 어려움이 바로 해석학적 순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3개년 간의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나타난 어려움들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상이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표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범주에 대하여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4대 권리영역으로 하여 이미 선 이해로 가지면서 각자의 이해에 따라 하위 영역을 설정하여 개별지표들을 생성했기 때문에 지표의 객관성에 대한 담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하위영역이나 개별지표들 간 경계의 모호함과 중복성에서 나타났거나, 정성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6년에 개발된 총 152개의 개별지표들과 각 지표들과 관련된 인권현장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향후 이를 면밀히 실증적으로 재검토하여 개별지표들에 대한 가감을 한 후 다시 새로운 개념의 틀로 범주화하는 수정작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념의 이해에 관한 어려움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찾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이미 개발된 지표들을 현장에 비추어 보아 지표의 가감을 결정

하는 연역적 반증(falsification)의 실증적 방법에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연구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실례는 2007년 실태조사 연구에서 전문가들에게 지표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를 물었을 때에 나타난 결과를 들 수 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타당도와 중요도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참여권 개별지표로서의 타당도에 있어서는 2위를 차지하였으나 중요도에서는 10위 안에 들지 못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비율’이 바로 그 예다. 타당도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것은 이 개별지표가 가지는 이론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중요도가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것은 이 개별지표가 가지는 현장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즉, 세부관심영역 ‘참정권’에 속하는 이 개별지표는 학교의 실천현장에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해도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어서 중요도가 낮았다고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이 가장 확실하게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대변할 수 있는 참여권의 대표적인 관심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타당도와 중요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힘든 결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학자들 간에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서 종종 이상적 이론의 추구를 더 중시하는 학자와 현실적 실천 상황에 더 가치를 두는 학자들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론 없는 실천 없고, 실천 없는 이론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이상적 이론을 담을 만한 실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론은 버려지기 쉽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비율’의 개별지표는 만약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존중되어 학교운영에 반영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개별지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론적으로는 참여권의 타당도를 높게 인정하지만 결국 실천현장의 현실을 더 많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적 이론이 실천현장에서 계속 외면당하면 그

이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현실을 이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상적 이론이 논해져야 한다. 이론과 실천은 끊임없는 변증법적 발전 관계이므로 이론을 통해서 실천 현상이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수정되어야 이상적인 실천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지표들이 그 자체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현실이 비록 따라주지 못해도 중요시하여 계몽적 차원에서 계속 설문문항에 넣어서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2. 2006~2008년 연구된 아동·청소년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제언

2006년의 아동·청소년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개발부터 2008년 아동·청소년 권리 5개국 국제비교를 고찰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향후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나 개선 및 이를 토대로 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된 청소년 발달권 지표에서는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의 5개 관심영역 중에서 가장 발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체적 발달에 대하여 보다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별지표에서도 주로 신체적 발달능력에 치우쳐 지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체적 발달 상태에 보다 많은 개별지표들이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논의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발달이 중요하고, ‘정상적인’이라는 수식어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는 기준의 상태를 표시하는 내용을 지닌 수식어지,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러한 발달 상태가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측정될 경우에는 생존권에 속하는 지표로 분류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발달 수준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발달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존권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빈곤, 질병, 영양, 신체충실도, 건강, 치료 등도 개별지표들이 따로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면, ‘정상적인’ 발달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달권 지표로도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언과 관련된 것으로 지표의 영역분류와 개별지표들은 때로는 중복되거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발달권의 관심영역 분류에 있어서 정서적 발달의 관심영역이 가지는 범주가 모호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이란 수식어가 가지는 의미가 가지는 모호함에서 기인하는데 과연 ‘정서’라는 단어가 가지는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08년 5개국 국제 비교 조사에서 총 43개의 설문문항들 중에서 33개가 정서적 발달을 묻고 있다는 사실과, 이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16개나 배당된 것은 정서적 발달이 가지는 의미의 범주의 모호함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발달의 관심영역을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발달 요소로서 문화적 발달이나 예술적 발달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성적 발달의 관심영역과 인간정신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발달¹⁾로 나누어 모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의 구성은 보다 균형 있는 관심영역들의 안배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연구되어온 아동·청소년 권리의 최종 목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수준이 국제기준과 국제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6년 개발된 지표들은 2008년 국제비교에서 사용된 설문문항들과 맥락과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국제비교 발달권 조사문항 총 43개 중 2007년 한국에서 국제조사를 예비하여 조사된 설문문항과 같은 것은 2~3개에 불과했다. 또한, 43개 중 33개의 설문문항들이 정서적 발달을 묻는 설문문항이었고, 이 중 16개가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었다는 것은 발달권의 다른 관심영역인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지

1) 심리적 발달에 있어 ‘심리적’이라는 말을 학자에 따라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정서, 감성, 정신 모두가 심리학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이라는 의미는 ‘정신’이나 ‘영혼’, ‘마음’을 담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나치게 편향된 설문문항의 구성으로 보인다. 보다 균형 잡힌 아동·청소년 권리의 실태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관심영역이나 세부관심영역 간의 개별지표들과 관련된 설문문항의 구성에 대한 안배가 의미 있는 학술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위에서 일반적인 문제점에 관한 제언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의 연구에 있어서도 ‘참여’라는 개념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앞에서 그 예로 ‘정보접근권’이 과연 참여권에만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개별지표들을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이나 관심영역의 설정은 다른 권리에 관한 분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영역간의 중복의 가능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말하는 ‘정보접근권’도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발달권에 속하는 정보접근권과 참여권에 속하는 정보접근권 등으로 나누어 관심영역이나 세부관심영역을 중복해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제언들을 종합해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표개발은 아동을 제외하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총정리하고 분석하여 아동을 포함한 인권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성찰 가운데 실태조사의 신뢰도와 명증성은 결국 지표의 신뢰도와 명증성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개발된 기존의 지표들의 분류에 있어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영역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분류인지부터 재논의를 거쳐 개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4대 영역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각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개념이 가지는 내포와 외연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보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들이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4대 영역을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것이 아니라 영역 간에 개별지표

들이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들이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청소년인권정책 현황과 과제모색

이 정 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정 유 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주무관)

‘1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권, 참여증진 정책’

1. (가칭) 청소년권리센터 운영

□ 사업 목적

- 지역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빈발하고 있는 청소년의 권리침해 및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담 기관 필요
-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권리보장 교육, 캠페인, 홍보 등으로 청소년 권익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주요 기능

- 청소년 권리에 관한 모니터링 및 상담 활동
 - 청소년 참여기구와 연계하여 청소년 권리침해 모니터링
 - 권리를 침해받은 청소년들의 상담 및 유관 전문기관과의 연계
- 청소년들의 권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청소년 권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 권리 전문가 풀 구축
 - 지역사회의 교사, 법률가, 경찰 등의 전문가 교육활동
- 청소년 권리의식 증진, 홍보 및 권리 활동 활성화 추진
 -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정리·제공
 -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홍보, 캠페인, 이벤트 사업 기획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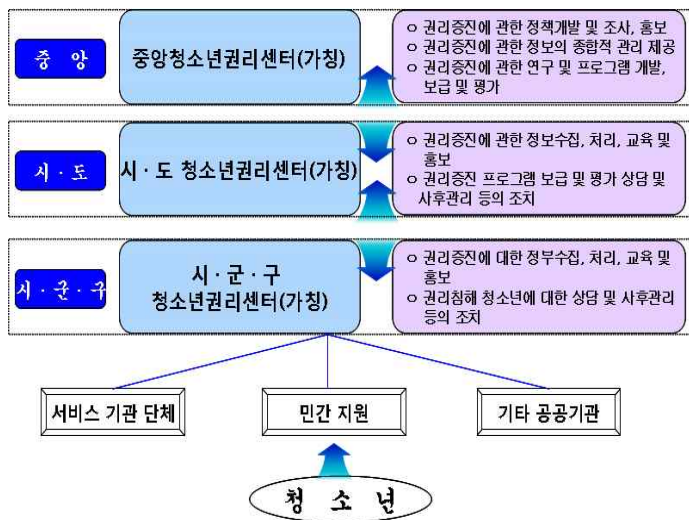
- 청소년 권리 활동의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창의적 체험 활동) 방안 마련
- 지역 청소년권리센터 설치 체계 마련 및 민간 기관 연계 체계 구축
 - '12년 지역 청소년권리센터 권역별 설치·운영을 위한 표준 매뉴얼 마련
 -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권리센터와의 연계 체계 구축

□ 로드맵

○ 연차별 설치 계획



○ 중앙 및 지방 단위 권리센터 운영 체계



2.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대상 맞춤형 권리증진 교육

□ 추진 배경

- 청소년들을 주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학교 및 근로 현장 등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 빈발
- 보편적 청소년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목표로 단순히 권리 침해 방지 차원이 아닌 청소년 권리를 존중·보장하는 차원의 교육 추진 필요
-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대상 맞춤형 권리교재 개발('10년 5월~11월)

□ 교육 계획

- 맞춤형 권리교재를 활용하여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실시 : 5개 권역별 20회 내외 예정

3.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 사업 목적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 기회와 경험의 장 제공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청소년의 사회 참여기반 확대를 통한 수요자 관점의 선진화된 정책 구현
- 다양한 청소년 관련 행사를 통한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 참여 및 넓은 사회적 안목 배양

□ 주요 내용

-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 청소년 정책의 입안·집행·평가 등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확보
-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특별회의 개최
- 청소년 중심의 정책 수립·평가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청소년 참여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이 주도하여 기획·운영하는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국청소년참여대회 개최 등

○ 청소년의 달 및 행사 지원

- 5월 청소년 주간을 기점으로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및 발전방안 논의
-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권리·활동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제고 및 청소년의 자아발전 계기 마련

<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기간	2005.5.21~5.22	2006.5.19~5.21	2007.6.1~6.3	2008.5.29~6.1	2010.5.27~31
장소	서울무역전시장(서울)	서울무역전시장(서울)	교엑스컨벤션홀(서울)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부산 BEXCO (부산광역시)
주제	청소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청소년 미래비전	희망/기회/성취의 빛	청소년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주최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후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산업자원부, 노동부, KTF, LG전자, 내셔널지오그래픽, 알파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교육청
인원	12,000여명	40,000여명	40,000여명	80,000여명	150,000여명

참고 자료

청소년 인권지표 정의, 산식, 자료원

참고자료. 청소년인권지표의 정의, 산식 및 자료원¹⁾

1) 청소년 생존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1-1. 고유의 생명권

1-1-1. 출생

1-1-1-1.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

- 정의: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가임연령층(15~49세)의 여성을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해당연령층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응용하여 ‘15~19세 여성 청소년’에 한정시킨 출산율
- 산식: $(\text{출생아 수} / \text{15~19세 여성 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출생 사망편),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1-2. 생명

1-1-2-1. 청소년 인공 임신중절율(연령별)

- 정의: 1년 동안 해당 연령집단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
- 산식: $(\text{연령별 인공임신중절건수} / \text{연령별 여자인구}) \times 1,000$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1-2-2. 청소년 타살률(성별, 연령별)

- 정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국제 질병/사인분류체계에 따라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사인별 사망자수의 백분비
- 산식: $(\text{청소년 타살자 수} / \text{청소년 사망자 수}) \times 100$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pp. 158-19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자료원: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출생 사망편), 각년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1-3. 사망

1-1-3-1. 청소년 사망률(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 산식: $(\text{사망자 수} / \text{해당 인구수}) \times 1,000$
- 자료원: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 신체적 생존권

1-2-1. 수명

1-2-1-1. 15세 청소년 기대여명(성별)

- 정의: 어떤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 연수.
여기에서는 15세를 청소년의 대표연령으로 설정함.
- 자료원: 통계청, 2003년 생명표, 2005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2. 빈곤

1-2-2-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text{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 수} / \text{해당 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국제연합아동기금,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각년도

1-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의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 미달 청소년 비율.
- 산식: $\text{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 수} / \text{해당 인구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3. 질병

1-2-3-1. 청소년 유병률(성별, 연령별)

- 정의: 조사대상 인구 중 대상기간 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
- 산식: (기간 내(2주간) 유병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3-2. 청소년 주요만성질환 유병률(성별, 연령별)

- 정의: 주요 만성질환(관절염, 고혈압, 치아우식증, 위염/소화성궤양, 알레르기성 비염, 요통/좌골통, 당뇨, 디스크, 사고후유증, 신경통 등)별로 유병률을 파악함
- 산식 : (기간 내(2주간) 주요만성질환 유병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3-3. 청소년 HIV/AIDS 감염률(성별, 연령별)

- 정의: HIV/AIDS인 사람의 수를 인구100,000명으로 나눈 비율
- 산식 : (HIV/AIDS감염자 수/대상 인구수) × 100,000
- 자료원: 질병관리본부, 전염병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4. 영양

1-2-4-1. 청소년 1일당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자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1일당 1인 영양권장량의 75%미만 섭취자의 백분율
- 산식: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4-2.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결식하는 청소년의 백분율
- 산식: (아침식사 결식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5. 신체충실도

1-2-5-1. 청소년 신체질량지수(BMI)상 저체중율(성별, 연령별)

- 정의: 신장과 체중을 알고 있을 경우 신장에 대한 체중의 비율
- 산식: $\text{체중(Kg)}/\text{신장(m)}^2$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5-2. 청소년 신체질량지수(BMI)상 비만율(성별, 연령별)

- 정의: 25정도(18.5~24.9)면 정상, 25.0~29.9는 과체중, 30.0~34.9는 경도비만, 35.0이상은 고도비만
- 산식: $\text{체중(Kg)}/\text{신장(m)}^2$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 건강

1-2-6-1. 청소년 장애유형별 장애율(성별, 연령별)

- 정의: 장애인복지법 15종 장애인유형별 장애청소년 비율
- 산식: (장애유형별 장애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1-2-6-2. 청소년 흡연율(성별, 연령별)

- 정의: 대상 청소년 중 흡연을 한 비율과 그 정도(하루 반 갑 이하, 한 갑, 한 갑 반, 두 갑 이상)를 나타내는 백분율
- 산식: (흡연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3. 청소년 음주율(성별, 연령별)

- 정의: 대상 청소년 중 음주를 한 비율과 그 정도(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를 나타내는 백분율
- 산식: (음주자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4.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성별, 연령별)

- 정의: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지와 그 정도
- 산식: (규칙적 운동실천자 수/대상 인구수) × 100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5.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성별, 연령별)

- 정의: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평가 수준
- 산식: 주관적 건강평가 수준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성별, 연령별)

- 정의: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인식정도(5점 척도)
- 산식: 스트레스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7. 치료

1-2-7-1.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수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적용인구 1,000명당 지급건수
- 산식: $(\text{지급건수}/\text{건강보험적용인구}) \times 1,000$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7-2.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수진율(성별, 연령별)

- 정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대상 연평균 입원치료 수
- 산식: $(\text{연간 입원진료건수}/\text{건강보험 적용인구}) \times 1,000$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7-3. 청소년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중 의료급여대상자의 백분율
- 산식: $(\text{의료급여 대상자 수}/\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8. 안전

1-2-8-1. 범죄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두려움(성별, 연령별)

- 정의: 당사자가 인식하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
- 산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8-2.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성별, 연령별)

- 정의: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
- 산식: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통계청, 2005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8-3.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성별, 연령별)

- 정의: 당사자가 느끼는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 수준
- 산식: 스트레스 인식정도 수준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9. 사고

1-2-9-1. 청소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율(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100,000명당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
- 산식: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2-9-2. 청소년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100,000명당 가정 내 안전사고로 사망·부상 비율
- 산식: (가정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9-3. 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100,000명당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부상한 자 비율
- 산식: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한 청소년 수/대상 인

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2-9-4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성별, 연령별)

- 정의: 해당 인구 100,000명당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비율
- 산식: (학교급식 식중독 경험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1-3-1-1. 청소년 자살률(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 수
- 산식: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2005

1-3-2. 가족

1-3-2-1. 소년소녀가정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결함으로 인하여 20세 이하 소년, 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청소년 수
- 산식: (등록된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1-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조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비율
- 산식: (신고된 조손가족의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1-3-2-3. 가출청소년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24시간 이상 이탈되어 가출한 것으로 신고된 청소년 비율
- 산식: (신고된 가출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1-3-3. 사회보장

1-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성별, 연령별)

- 정의: 인구 100,000명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청소년 비율
- 산식: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소년 수/대상 인구수) $\times$ 100,0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1-3-3-2.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성별, 연령별)

- 정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소년에게 급여에 대한 만족도 수준
- 산식: 기초생활 수급 청소년 급여만족도 수준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 청소년 보호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2-1.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2-1-1-1. 학교폭력발생률(학교유형별, 폭력유형별, 성별)

- 정의: 학교폭력 종류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종류별 폭력경험아동 수/총 아동수) $\times$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2-1-1-2. 체벌경험률

- 정의: 교사로부터 체벌당한 경험 있는 청소년 비율
- 산식: (형태별 체벌경험 청소년 수/총 청소년 수) × 100
- 자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연연구소,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2-1-2. 성 매매 및 성적착취

2-1-2-1.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발생률

- 정의: 성폭력 유형별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수
- 산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해바라기 아동센터

2-1-2-2. 성매매의 연간발생률

- 정의: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 수
- 산식: (성매매경험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 ×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해바라기 아동센터

2-1-2-3. 미혼모의 18세 미만 인구비율

- 정의: 18세 미만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의 비율
- 산식: (18세 미만 미혼모 출산율/전체출산율) × 100
- 자료원: 인구통계편람

2-1-3. 경제적 착취

2-1-3-1.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산업 취업률(직종별, 성별)

- 정의: 18세 미만 청소년 취업자 수 중 유해산업 취업 청소년의 비율
- 산식: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산업 취업자 수/18세 미만 청소년 취업자수) × 100
- 자료원: 노동부

2-1-3-2. 평균 근로시간

- 정의: 근로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산식: $(\sum \text{근로청소년의 근로시간} / \text{전체근로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2-1-3-3. 성인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청소년 임금비율(연령별, 직종별)

- 정의: 직종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근로청소년 평균 임금수준
- 산식: $(\text{청소년근로자평균임금} / \text{전체근로자평균임금}) \times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2-1-3-4. 근로 여건 만족도

- 정의: 근로청소년의 근로환경 및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 자료원: 보건사회연구원자료 및 새로운 조사

2-1-3-5. 최저임금 미 보장 근로청소년비율

- 정의: 성인대비 근로청소년의 최저임금 미보장 근로청소년의 비율
- 산식: $(\text{최저임금미보장 청소년근로자 수} / \text{최저임금미보장성인근로자 수}) \times 100$
- 자료원: 노동부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성차별

2-2-1-1. 양성평등의식지수

- 정의: 15~24세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2. 민족차별

2-2-2-1. 인종별 취학률

- 정의: 취학적령인구 대비 실제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비율

- 산식: (인종별각급학교 학생 수/인종별각급학교 취학적령인구 수)
×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2-2-2. 혼혈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 정의: 15세에서 24세 혼혈청소년에 대한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2-3. 이주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 정의: 15세에서 24세 이주가정 청소년에 대한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3. 지역차별

2-2-3-1. 지역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정의: 거주지역으로 인한 청소년의 차별에 대한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4. 연령차별

2-2-4-1. 연령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정의: 연령으로 인한 청소년의 차별에 대한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2-5. 고용차별

2-2-5-1. 직종별 청소년의 취업인구

- 정의: 24세 미만 청소년의 직종별 취업 인구수
- 산식: (직종별 취업 인구수/직종별 청소년 인구수) ×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노동부, 한국청소년개발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2-6. 장애차별

2-2-6-1. 장애 청소년의 취학률

- 정의: 취학적령 장애아 중 특수학교 재학 및 통합교육 수혜학생비율
- 산식: (과정별 장애청소년의 취학생 수/과정별 적량장애아 수)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2-6-2. 장애청소년취업률

- 정의: 각급학교 졸업생수 대비, 직종별, 성별 장애청소년의 취업률
- 산식: (장애청소년의 취업자 수/장애청소년 졸업생 수) $\times$ 100
- 자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2-6-3.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식

- 정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2-3.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2-3-1. 대안적 양육

2-3-1-1. 대안적 양육(위탁가정, 쉼터, 입양)을 받는 청소년 비율(9세~18세)

- 정의: 대안적 양육을 받는 청소년 비율(유형별, 연령별)
- 산식: (대안적 양육(유형별)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요보호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한국청소년쉼터협회, 국가청소년위원회

2-3-1-2. 대안적 양육시설 운영 예산

- 정의: 연간 대안적 양육시설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
- 산식: 해당기관(보호시설별)운영비의 합/전체 청소년보호시설 운영비
- 자료원: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2-3-2. 범죄

2-3-2-1. 청소년 범죄율

- 정의: 범죄자중 청소년 비율
- 산식: (청소년범죄자 수/총범죄자 수) × 100
- 자료원: 청소년백서, 법무부

2-3-2-2. 청소년 누범률

- 정의: 범죄청소년 중 재범이상 청소년 비율
- 산식: (재범이상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 × 100
- 자료처: 법무부

2-3-2-3.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 정의: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 산식: (청소년 대상 범죄 수/전체 범죄 수) ×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새로운 조사

2-3-2-4. 청소년문제해결전화(1388)접수건수 대비 처리율

- 정의: 청소년문제해결전화(1388) 접수건수 대비 문제처리 비율
- 산식: (문제처리 총 건수/청소년문제해결전화 총 접수건수) ×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2-3-2-5.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 정의: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 산식: (전체 보호청소년 수-변호인을 선임한 보호 청소년 수/변호인의 도움이 전무한 보호 청소년 수) × 100
- 자료원 : 법무부

2-3-2-6. 범죄청소년 1인당 교정예산액

- 정의: 범죄 청소년 1인에 대한 정부의 교정예산액
- 산식: (정부의 교정예산이 투입되는 총 청소년 범죄자 수/청소년 범죄에 대한 정부의 총 교정 예산액) $\times 100$
- 자료원: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2-3-3. 가출

2-3-3-1. 가출 청소년 비율

- 정의: 원인별, 성별 연간 가출청소년의 비율
- 산식: (가출경험 청소년 수/총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2-3-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 정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수
- 산식: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쉼터 등) 수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2-3-3-3.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 수용 비율

- 정의: 전체 가출청소년 대비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용률
- 산식: (Σ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의 수용인원/전체가출청소년의 수) $\times 100$
- 자료원: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2-4. 청소년 유해환경

2-4-0-1. 학교주변 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건수(업소유형/지역별)

- 정의: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건수
- 산식: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건수
-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자료

2-4-0-2.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실적

- 정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모니터링 된 유해매체 수
- 산식 :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실적 수
- 자료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2-4-0-3.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수

- 정의: 지자체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지정 현황
- 산식: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수
-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3) 청소년 발달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3-1-1-1. 취학을

- 정의: 취학연령인구 중 정규교육과정의 참여율
- 산식: $(\text{정규교육과정 학생 수} / \text{취학연령인구})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1-1-2. 중퇴율

- 정의: 재학생 중 사망, 질병, 가사, 폭행, 부적응, 휴학, 이민 등의 사유로 제적, 중퇴, 휴학한 학생의 비율
- 산식: $(\text{제적 중퇴자 및 휴학자 수} / \text{재적 학생 수})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1-1-3. 대학진학률

- 정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
- 산식: $(\text{대학입학학생 수} / \text{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수})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1-1-4. 학생1인당 사교육비 비율

- 정의: 각 급 학교 학생 1인당 월간 평균 과외수업(각종 사설학원, 개인 교습비, 배달 학습지비 등)
- 산식: $(\text{연간 총 과외수업비} / \text{전체 학생 수}) / 12$
- 자료원: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3-1-2. 인지능력

3-1-2-1. 창의성 지수

- 정의: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1-2-2. 문제해결능력 지수

- 정의: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 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1-2-3. 자기주도학습준비도

- 정의: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

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1-2-4. 지능지수

- 정의: 청소년의 지능지수(IQ)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 정의: 부모가 자신에게 적절한 조언과 충고, 칭찬을 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과 의사를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 정의: 교사가 자신에게 적절한 조언과 충고, 칭찬을 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과 의사에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1-3. 지역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 정의: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1-4. 청소년 여가시간

- 정의: 전체 청소년이 한 주에 보내는 평균적인 여가활동 시간
- 산식: Σ 청소년의 주당 총 여가시간/전체 청소년 수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 정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유형별 여가시설의 수
- 자료원: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및 한국의 사회지표

3-2-2. 정서적 안정

3-2-2-1. 우울증 지수

- 정의: 청소년의 우울증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2-2. 스트레스 지수

- 정의: 청소년의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2-2-3. 행복(심리적 안정) 지수

- 정의: 청소년의 행복감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3-3-1-1.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 정의: 청소년 1명당 자신의 고민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평균 단짝 친구의 수
- 산식: Σ 응답 청소년의 단짝 친구 수/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1-2.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로그램 참여횟수

- 정의: 청소년 1인당 청소년 중 청소년 단체 및 시설 프로그램의 평균 참여 횟수
- 산식: Σ 청소년단체 및 시설프로그램 참여 횟수/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1-3.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 정의: 학생 1명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 산식: Σ 청소년 자원봉사시간/전체 청소년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1-4.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동아리 수

- 정의: 학생 1명당 학내외 청소년 동아리에 평균 가입 수
- 산식: Σ 청소년 동아리 가입 수/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원, 아동발달백서 통계청, 사회지표보고서

3-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 정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 정도
- 자료원 : 새로운 조사

3-3-2. 사회성 발달정도

3-3-2-1. 갈등이해능력 지수

- 정의: 청소년의 갈등이해능력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 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2-2. 문화감수성(타문화수용능력) 지수

- 정의: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지수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 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3-2-3. 리더십 능력 지수

- 정의: 청소년의 리더십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 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 기회

3-4-1-1. 월 평균 진로교육실시 실시 시간 수

- 정의: 총 수업시간 대비 직업교육 또는 체험학습 실시 시간의 비율.
- 산식: $(\text{직로교육실시 시수} / \text{총 수업시간}) \times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3-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 정의: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기 위한 기회의 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1-3.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 정의: 청소년 진로교육 참여한 학생의 주관적인 만족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2. 직업능력

3-4-2-1. 진로성숙도 지수

- 정의 :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 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4-2-2. 직업기초능력 수준

- 정의: 청소년의 진로기초능력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별 항목개발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지수
- 산식: 조사도구 개발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3-5-1-1. 청소년 주당 평균 운동시간

- 정의 : 청소년이 1인이 일주일에 운동하는 평균 시간
- 산식: $\sum \text{청소년의 주당 운동시간} / \text{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 정의: 청소년 1인이 하루에 잠을 자는 평균 수면시간

- 산식 : Σ 청소년 1일 수면시간/전체 청소년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3-5-2. 신체적 능력

3-5-2-1. 50m 달리기

- 정의 : 청소년의 50m달리기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3-5-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 굽혀 매달리기)

- 정의: 남자청소년의 팔굽혀 펴기 횟수/ 여자청소년의 팔 굽혀 매달리기 시간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3-5-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 정의: 청소년의 60초당 윗몸일으키기 총 횟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3-5-2-4.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 정의: 도움닫기 없이 구름판 위에서 두발을 놓고 뛰는 거리의 정도
- 자료원: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3-5-2-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 정의: 청소년이 1,500m을 달리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 자료원: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3-5-2-6.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정의: 앉아서 윗몸을 앞으로 2초 이상 구부리는 정도
- 자료원: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4) 청소년 참여권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4-1 자기결정권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 정의: 청소년이 종교를 결정할 경우에 부모의 종교와 상관없이 부모가 청소년의 종교를 존중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 비율

- 정의: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 비율
- 산식: 전체 종교재단 설립 중·고등학교의 비율(%)=(전체 종교재단 설립 중·고등학교의 수/전체 중·고등학교의 수) × 100
종교재단 설립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전체 종교재단 설립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전체 중·고등학교 재학생 수) × 100
- 자료원: 교육인적자원부

4-1-1-3. 종교 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 정의: 종교기관이 설립한 학교 중 종교 대체과목을 개설하였거나 자유선택을 허용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종교과목 대체과목이 있거나 자유선택 학교 수/종교기관 설립 학교 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 정의: 가정의 대소사(이사, 전학, 부모이혼 등)를 결정할 경우에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2-2.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의 비율(%)

- 정의: 연간 부모가 이혼한 청소년 중 부모를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
- 산식: (부모이혼 시 부모 선택 청소년 수/부모가 이혼한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 비율(%)

- 정의: 연간 부모가 이혼한 아동 중 부모의 자녀 면접권이 인정되는 아동 비율, 추후 아동의 부모 면접권이 인정되는 이를 포함함
- 산식: (면접권 인정 청소년 수/이혼 부모의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 정의: 청소년이 상급학교를 결정할 경우에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 정의: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할 경우에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매우 존중, 대체로 존중, 보통, 대체로 무시, 매우 무시)에 대한 청소년 구성 비율
- 산식: 항목별 응답 수/전체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1-4.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 정의: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스포츠, 취미활동, tv 시청 등)에 대한 선택을 부모가 존중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 취향의 표현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 비율

- 정의: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자율화 실천 학교 비율
- 산식: (두발 및 복장 자율화 학교 수/전체 학교 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 정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해 부모가 간섭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2. 학생으로서의 의사표현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 정의: 학생이 참여하는 교지 및 신문을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1년간 교지 및 학교신문을 발행하는 학교 수/전체 학교 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 부여하는 학교의 비율

- 정의: 교내에서 학생이 징계 받을 때 학생에게 의사 소명권을 부여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학생 징계 시 의사소명권 부여하는 학교 수/전체 학교 수) ×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 정의: 선생님 앞에서 학생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 내에서의 집회·결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 정의: 교내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 활동을 하는 학생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 산식: $(\text{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수} / \text{전체 학교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3-1-2. 청소년 중 학생회 자치활동 참여비율

- 정의: 전체 청소년 중 학생회 간부역할을 하거나 의결과정에 참여하거나 학생회 주관행사를 준비하거나 본인의사로 참여한 학생의 비율
- 산식: $[(\text{학생회간부로서 활동 하는 학생 수} + \text{학생회 의결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 + \text{학생회 주관행사 준비에 참여한 학생 수} + \text{본인인 선택한 학생회 주관행사에 참여하는 학생 수}) / \text{전체 학생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3-2. 학교 외에서의 집회·결사

4-3-2-1. 청소년 관련 단체에 가입한 청소년 비율

- 정의: 청소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학교 이외의 관련 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비율
- 산식: $(\text{청소년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수} / \text{전체 청소년 인구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3-2-2.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 정의: 학생이 인식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대한 가입 및 단체의 활동 참여에 대해 학교가 규제하는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 정보접근권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 정의: 연간 발행되는 도서 중 입시관련 서적을 제외한 청소년 대상 도서의 비율
- 산식: $(\text{청소년 도서 수} / \text{총 발행 도서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1-2. 청소년 도서대출 현황

- 정의: 청소년 1인당 월평균 도서대출 현황
- 산식: $[(\text{연간 전체 도서대출 권 수} - \text{연간 성인 도서대출 권 수}) / \text{전체 청소년 인구 수}] / 12$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 정의: 청소년 가구 중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
- 산식: $(\text{컴퓨터 보유 청소년 가구 수} / \text{총 청소년 가구 수}) \times 100$
- 자료원: 인구주택총조사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 정의: 청소년 가구 중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
- 산식: $(\text{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청소년 가구 수} / \text{총 청소년 가구 수}) \times 100$
- 자료원: 인구주택총조사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정의: 청소년의 일주일 동안의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산식: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정의: 청소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의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1-2.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재 정도

- 정의: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원하거나 필요하지만 부모나 학교의 제재로 아르바이트를 못한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1-3. 청소년 실업률

- 정의: 고등학교 졸업 연령(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본인이 취업을 원하거나 취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한 비율
- 산식: (미취업 청소년 수/취업 원하는 청소년 수) $\times$ 100
- 자료원: 통계청의 20~24세 청소년의 실업률 통계자료이용

4-5-1-4. 청소년 정책관련 활동 동아리 참여율

- 정의: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청소년 정책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의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2. 참정권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성적 등을 통해)하는 학교 비율

- 정의: 학생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학생대표 피선출권 제한 학교 수/전체 학교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 정의: 학교의 교칙 제·개정에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교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는 학교 수/전체 학교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 학교비율

- 정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학교 수/전체 학교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4-5-2-4. 청소년의 선거 참가율: 유형별(총선, 대선 등), 연령별

- 정의: 선거권 있는 청소년(만 20세 이상) 중 총선, 대선, 지방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전체 선거권을 가진 청소년인구 수-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인구 수)/전체 선거권을 가진 청소년 인구 수] $\times$ 100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 정의, 산식 및 자료원

5-1. 청소년인구

5-1-1. 일반청소년 인구

5-1-1-1. 총 인구수(성, 연령, 지역별)

- 정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에 수록된 당해 연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 자료원: 통계청 인구통대통계연보

5-1-2. 특수청소년 인구

5-1-2-1. 장애청소년 인구수

- 정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수 중에서 장애인으로 판별되는 청소년 수
- 자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서

5-1-2-2. 한부모가정 청소년 인구수

- 정의: 이혼, 사별, 가족해체 등으로 부 혹은 모 한쪽에 의해 구성되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인구수
- 산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인구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1-2-3. 이주노동자 자녀 청소년 인구수

- 정의: 동남아시아 등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 가구의 청소년 인구수
- 산식: 이주노동자 가정의 전체 청소년 인구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1-2-4. 다문화가정 청소년 인구수

- 정의: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인 출신인 가정의 청소년 수
- 산식: 다문화가정 청소년 인구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 법과 제도의 구축

5-2-1.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기능

5-2-1-1.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실태와 기능

- 정의: 청소년인권 관련 각종 법령의 정비 실태와 기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1-2.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종류

- 정의: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의 종류
- 자료원: 관련법

5-2-1-3. 실제 청소년인권 향상 효과

- 정의: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인권 향상의 효과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2.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노력

5-2-2-1. 청소년인권 관련 중앙정부의 정비 현황

- 정의: 청소년인권 관련 중앙정부의 정비 현황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2-2. 행정조직의 청소년인권 보호 정도

- 정의: 행정조직의 청소년인권 보호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2-3.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향상 노력

- 정의: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향상 노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2-2-4.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증진 효과

- 정의: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증진 효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3. 비정부조직

5-3-1.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

5-3-1-1. 비정부조직의 구성 현황

- 정의: 청소년인권 관련 비정부조직의 수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3-2.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의 활동노력

5-3-2-1.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노력

- 정의: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정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5-3-2-2.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실적

- 정의: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실적
- 자료원: 각종 비정부조직 실적 자료

5-3-2-3. 비정부조직의 인권운동에 대한 인지도

- 정의: 비정부조직의 인권운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 자료원: 새로운 조사

◆ 연구진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자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워크숍자료집 10-S32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 · 참여권-

인 쇄 2010년 11월 5일

발 행 2010년 11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 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